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 지침

2024. 7. 29., 제정
2025. 11. 27., 일부개정

제1장 개요

제1절 지침의 목적

1-1-1. 이 지침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지자체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수립 방법을 제시하는 데 있다.

제2절 시행계획 개요

1-2-1. (수립권자와 범위)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설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을 대상으로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1-2-2. (지위)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 전략과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실현하는 중기계획으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1-2-3. (성격)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 전략 달성에 필요한 세부사업들의 통합적 계획으로 기본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해 각각의 세부사업들과 농촌특화지구가 도출되는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사업 등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과 사업 간 연계방안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1)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발전전략에 따라 농촌공간 재구조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경제 활성화, 생활서비스 확충 등을 위한 실행 방안을 체계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종합하여 사업화하는 계획이다.

(2) 시행계획은 (1)에 따른 사업화를 계획하는 것 외에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규제 특례나 지방세 감면, 기타 시장·군수가 고려할 수 있는 규제개선 등 다양한 수단의 활용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포괄적인 계획이다.

(3) 농림축산식품부・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투자 사업을 포함하여 추진할 사업을 선별하여 정하고, 사업 간 연계 등을 고려하여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4) 법 제16조에 따라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농촌협약의 신청 서류로 시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평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3절 계획수립 대상 및 목표연도

1-3-1. 시행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기본계획에서 지정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며, 시장·군수는 필요할 경우 두 개 이상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동시에 각각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3-2. 시행계획의 시간적 범위(목표연도)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계획수립 시점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내용적 범위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세부사업 계획, 규제개선 및 규제 특례의 활용 방안 등을 포함한다.

제2장 계획의 내용과 수립 원칙

제1절 계획의 내용

2-1-1. 시행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항목별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1) 계획의 개요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여건) 및 전망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계획수립 방향(기본구상 포함)

(4)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총괄 사업계획 및 세부 사업계획(투자계획 포함)

(5)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농촌특화지구의 활성화 관련 내용 포함)

(6) 사업비 집행 및 관리 계획

(7) 추진체계 및 성과관리

(8) 기대효과

제2절 시행계획 수립 원칙

2-2-1. (기본계획과의 정합성)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 전략을 실현하고,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농촌공간구조 재편 방향과 부합하여야 한다.

2-2-2. (주민 등 참여)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계획수립 초기 단계부터 주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현장포럼,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계획한다.

2-2-3. (지역특성 반영)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특성(지리적 위치, 보유자원의 정도, 지역 공동체 활동 수준, 농촌형 일자리 분포, 추진 중인 다른 계획이나 사업 등)을 반영하고, 문제점을 중장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4. (실현 가능성) 시행계획의 시간적 범위, 지역주민의 참여도, 시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이행가능성이 높은 사업들로 구성하고, 추진체계 운영 방안, 재원조달 계획 등을 마련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2-2-5. (다양한 연계사업)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포함하여 지자체 사업(지방이양사업, 시군의 자체사업 등), 타 부처·공공기관·민간투자 사업을 발굴하되, 점 단위 사업배치 대신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또는 읍·면·리 등 공간(면)단위별로 계획에 포함할 개별 사업 간의 연계를 고려하여 세부 사업계획을 구체화한다.

2-2-6. (농촌특화지구 지정) 농촌특화지구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전략과 지정 후보군을 검토하여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지구를 지정하고, 유형별 기능에 적합한 세부사업들을 발굴·연계한다. 또한, 지구 내 추진사업의 계획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다른 세부사업들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2-2-7. (계획의 합리성) 중심지-기초생활거점-배후마을로 이어지는 생활서비스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면서 이미 추진한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단계별 추가 투자 방안 등을 제시하여 일회성 단기 계획에 머물지 않는 중장기적인 추진 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생활서비스 전달체계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소외지역이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한다.

제3절 시행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2-3-1. 시행계획서 작성 시 다음 항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 지침 2-1-1(시행계획의 내용)의 내용·항목의 누락이 없을 것

(2) 기본계획,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 계획 연계성 확보

(3) 계획의 논리성, 일관성, 합리성 확보

(4) 현황자료의 신뢰성 확보

① 자료출처 명시

②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

(5) 적정한 계획기법 적용

2-3-2. 시행계획서는 2-1-1(시행계획의 내용)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농촌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시군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통보되는 농촌협약 추진계획,

‘농촌협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과 개별사업 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양식,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2-3-3. 성과물의 작성

(1) 모든 계획서 및 도면 등의 성과물은 일반인이 알기 쉽고 시행계획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혼란이 없도록 용어 사용이 분명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의 전달력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시행계획서(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사업계획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련 계획과 도서를 포함)와 자료집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① 시행계획서는 중요도 높은 핵심 사항 위주로 300쪽 이내(A4규격)로 작성하고, 제3장의 현황 및 여건분석에 대한 내용은 가급적 시행계획서의 40% 이내(그중 기본계획분석 3-1-3은 6쪽 이내)로 한다.

② 자료집에는 시행계획서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관련 기초·근거 자료(읍·면별 분석, 농촌특화지구 후보군, 주민의견수렴에 대한 세부과정 및 그 결과 등 기타 검토과정의 내용), 증빙서류 등을 수록한다.

2-3-4. 시행계획의 변경

(1) 시행계획 변경 시 법 제8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시·도지사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①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②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③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변경 근거가 분명한 경우

④ 법령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에 따른 도시·군계획이 변경되어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도 포함한다.)에는 종전 시행계획의 내용 중 수정이 필요한 부분만을 보완하고 수정된 내용에 대한 비교표를 첨부한다. 또한, 법 제11조에 따른 승인 절차를 거칠 때에는 수정·보완된 부분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제4절 시행계획의 구성 및 수립

2-4-1. 시행계획은 개요, 현황 및 여건 분석, 기본구상, 세부사업 발굴 및 선정, 사업계획,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로 구성한다.

(1) '개요'는 수립 배경 및 목적, 시간적・공간적・내용적 범위, 수립 경과(계획과정을 포함하여 제시) 등을 기술한다.

(2) '현황 및 여건 분석'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공간구조 분석 및 설정, 발전전략, 농촌특화지구 육성방향, 부문 계획의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와 추가로 조사한 '지역 여건 및 특성'을 분석하고 종합하여 추진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을 기술한다.

(3) '기본구상'은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농촌공간 발전을 위한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4) '세부사업 발굴 및 선정'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내 추진할 세부사업의 선정 기준 과 과정을 기술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와 세부사업과의 연계성과 관계를 설명하여 제시한다.

(5) '사업 계획'은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추진전략별 추진과제와 이를 이행할 세부사업의 이행방안과 실천계획을 제시한다.

(6)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기본방향,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관련 도서 등을 포함한다.

(7)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는 추진체계, 재정 및 투자계획, 성과관리계획을 제시한다.

2-4-2. 수립한 시행계획(안)에 대해 주민공청회, 기초・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시・도지사의 승인을 거쳐 계획을 완성한다.

제3장 현황 및 여건 분석

제1절 기본원칙

3-1-1. 시장・군수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문제점, 강점, 현안 및 잠재력, 지역 특성과 현황분석을 통해 계획의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설정하고, 이를 사업으로 구체화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초조사를 실시한다.

3-1-2. 기초조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조사·분석한 내용을 최대한 활용하되, '기본계획 분석'과 '지역의 여건 및 특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또한 세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의 기초조사보다 구체적이고 적정한 공간단위(농촌재생활성화 지역 전체 또는 읍·면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리 단위 또는 일부 격자단위)를 설정하여 조사·분석을 수행하고, 지역의 수요 파악을 위한 의견수렴을 병행한다. 이와 함께 각 항목별 공간적 특징과 시사점을 요약한 소결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3-1-3. '기본계획 분석'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각 항목에 대한 지역의 핵심 현안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시행계획에 포함할 내용과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을 파악한다. 또한, 각 항목별로 작성하거나 현안별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공간구조 분석 및 설정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전략

(3) 농촌특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

(4) 부문 계획의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등

3-1-4.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 대한 조사와 분석은, 기본계획 분석에서 파악한 핵심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공간단위로 추가 조사나 분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지역의 특성

① 공간적 입지(위치 및 특성)

② 인구

③ 농촌경제 및 일자리

④ 토지 이용(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필요한 토지 이용 및 주요시설 등 포함)

⑤ 주거 및 정주여건

⑥ 생활서비스 시설 및 제공

⑦ 농촌 공동체

⑧ 농촌 환경·경관 보존 및 관리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 (주거지, 정주여건 및 농촌환경 등에 대해 해당 시설의 부정적 영향을 검토하고 개별 시설에 대해서는 존치, 이전, 철거, 정비 대상으로 구분하여 제시 가능)

* 개별입지공장, 폐기물 처리시설, 축사, 태양광시설 등 농촌의 환경·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시설

**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3.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다만, 별표 2 제1호의 축산시설과 제38호3)에 따른 처리시설(「축산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방역 시설 안에 있는 처리시설로 한정) 및 공공처리시설(스마트 축산단지 내에 있는 공공처리시설로 한정)은 제외하되, 「악취방지법」 제7조에 따른 악취의 배출허용기준, 주민의 삶의 질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 농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축산시설・처리시설・공공처리시설은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3) 행정협의회,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수요

①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내 읍·면 단위의 단계적 주민 의견 수렴(설문조사, 인터뷰, 설명회 등) 내용 제시 및 종합분석

② 행정협의회 및 주민 의견에 대한 사업 반영 필요성 검토

③ 기초정책심의회, 지역전문가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

3-1-5. 기초조사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을 기준연도로 하고, 기준연도의 자료를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한 항목은 가장 최신자료를 활용하거나 과거 자료로부터 기준연도 자료를 추정하여 활용한다.

3-1-6. 지역특성과 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인접하거나 관련성이 높은 관내 다른 지역 또는 다른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여 조사한다.

제2절 조사 방법

3-2-1. 기초조사는 현황 파악 및 실태분석을 위해 각종 문헌, 통계자료 및 행정자료 활용, 현장 조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고, 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지답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

(1) 중장기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충분한 기간의 자료(인구 추이, 토지이용 변화, 지역 산업구조 및 경제활동 변화 등)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2) 수집된 자료는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면이나 도표의 형태로 변환하거나 대표성 있는 수치를 구하여 정리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지리정보체계(GIS)나 통계분석

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다양한 분석기법을 활용하고, 수치지도, 항공사진, 인공위성사진 등 최신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3-2-2. 시행계획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잠재력과 문제점, 발전방향과 개선 과제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설문조사, 인터뷰, 워크숍 등)하여 주민의 정책 수요를 파악한다. 필요시 인접한 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 의견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절 종합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3-3-1. 시장·군수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를 설정하기 위하여 3-1-1에 따른 기초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정리하여 추진전략과 개선 과제를 도출하며,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1) 3-1-2에서 제시한 소결 등을 바탕으로 공간적·기능적 관련성이 높고,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지역을 연계·종합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

(2) 기초조사 분석결과, 문제점 및 잠재력, 대내외 여건, 지역수요 등을 종합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추진해야 할 개선과제를 도출할 것

(3)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강점과 잠재력,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SWOT분석 등 적정한 종합분석 기법을 활용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사업계획으로 우선 추진해야할 과제를 선별할 것

(4) 선별된 과제는 유사하거나 연계가능한 과제를 통합·조정하여 종합하고, 이르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시·군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 또는 세부사업으로 확정할 것

3-3-2. 도출된 추진과제는 3-3-1의 종합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강점과 기회요인(풍부한 산림자원, 경쟁력 있는 지역특산물, 활성화된 지역공동체 조직 등)은 적극 활용하고, 약점과 위기·위협 요인(저출생, 낮은 청년 비율, 산재된 농촌환경관리시설 등)은 개선 또는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장 기본구상

제1절 비전 및 목표의 설정

4-1-1. 비전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전략과 제3장의 현황 및 여건분석 등을 토대로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 구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핵심단어로 제시한다.

4-1-2. 목표는 비전 달성을 위해 5년 후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해 지향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3개 내외로 설정한다. 목표별로 설정배경, 목표 달성에 대한 추진방향을 추가하여 설명한다.

(1)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군의 목표, 농촌공간구조 재편 방향,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 전략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농촌공간 구조 상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지리적 여건 및 도시 접근성(근교농촌, 일반농촌, 원격농촌), 시군에서의 기능과 역할, 다른 농촌재생활성화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

제2절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의 제시

4-2-1.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이를 이행할 세부사업을 제시하고, 비전,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와의 관계와 체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한다.

<목표, 성과지표, 추진전략, 추진과제의 도출 예시>

(1) 추진전략은 목표 달성을 위해 목표별로 세분하여 제시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고 공간적 접근방식으로 차별화된 시군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는 문구를 사용한다.

(2) 추진과제는 추진전략별 세부 실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추진과제는 2개 이상의 세부사업(제5장의 사업계획을 구성하는 과제)으로 구성된다.

제3절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4-3-1. 성과지표는 시행계획의 목표와 성과 달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부사업계획의 추진 정도와 목표 달성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성격을 지닌다. 또한, 성과지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성과지표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계한다.

4-3-2. 성과지표는 시행계획의 목표 달성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표를 발굴한다. 지표는 결과(Outcome)보다는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중심의 지표를 사용한다. 성과지표의 설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은 7-2(성과관리계획)를 참고한다.

(1) 성과지표는 추진과제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제시하며, 기준연도 대비 연차별 목표치를 함께 제시한다.

(2) 목표별 성과지표는 추진전략-추진과제-세부사업 추진에 따른 성과를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하고, 제시한 성과목표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대표 지표로 설정한다.

(3) 성과지표는 향후 5년 후에 달성하고자 하는 방향과 달성 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표로 구성하고, 도달 목표, 조사 시기와 주체, 방법 등도 함께 제시한다.

(4) 성과지표의 측정 주기를 정하고, 해당 주기에 맞추어 측정 결과치의 출처와 근거가 명확한 결괏값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절 농촌공간 발전 방향

4-4-1. 기본계획의 '농촌공간구조 설정'에서 제시한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거점, 축, 권역의 육성 및 농촌공간의 이용방향에 대해 5년 동안 이를 실행할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1) 거점, 축, 권역의 육성 방향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거점(생활서비스 공급거점은 반드시 포함), 축, 권역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2) 농촌공간의 이용 방향에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해당 지역에 대한 계획적 재배치, 집단화 등에 대해 요약하여 설명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3) 농촌공간구조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읍면별 농촌공간 발전방향, 이행방안 및 구상도를 추가하여 설명할 수 있다.

4-4-2.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하여 유사한 기능을 집적하여 농촌공간의 이용방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특화지구 종류별 이행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제5장 세부사업의 발굴 및 선정

제1절 선정원칙

5-1-1. 기본구상에서 제시한 추진전략과 추진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과제별로 다음의 내용을 고려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하 '세부사업'이라 한다)을 발굴·선정한다.

(1) (정책 부합성)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비전, 목표, 추진 전략 및 추진과제의 이행·성과창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연계성)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부문별 계획(주거·정주 여건 개선, 농촌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제공, 농촌 환경·경관의 보존 및 관리, 농촌위해시설 정비)과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추진 전략 및 추진 과제와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한다.

(3) (시급성)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위해 조속한 개선, 보완, 정비 등 대응이 요구되어 사업 시행 시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4) (실현 가능성) 시행계획의 시간적 범위, 참여 주체의 역할·기능, 지자체의 재정 투자·집행 여건, 지역 보유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들을 선정한다.

(5) (지속 가능성) 계획수립 시부터 사업종료 후에도 당초에 계획한 목적과 기대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검토하고, 필요한 관리 주체, 운영비 확보 방안까지 계획에 반영한다.

(6) (지역 특화) 지역이 보유한 특색있는 유·무형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업으로, 사업 시행을 통해 시군별 또는 농촌재생활성화지역별로 특화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한다.

제2절 세부사업의 선정

5-2-1.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사업의 선정기준 및 선정 과정을 제시하고, 향후 5년간 추진할 세부사업을 선별하여 확정한다.

(1) 시장·군수는 5-1-1(선정 원칙)과 다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한 절차를 통해 세부사업을 선정하며, 선정 기준과 선정 시 추진한 절차에 관한 내용(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 행정협의회 등의 운영 현황 등)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사업 시행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목표,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타 사업 또는 농촌특화지구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세부사업을 선별한다.

(3) 세부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시군 내 관계 부서(사업시행·사후관리 부서),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한 후 세부사업 목록을 확정한다.

5-2-2. 5-2-1에서 선정된 시행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 세부추진과제와의 관계와 연계성을 설명하는 관계도를 제시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부가적인 설명을 제시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세부사업의 관계도 예시>

기본계획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추진전략명1	세부추진과제명1
추진전략명2	세부추진과제명1

⇨

시행계획(기본계획과 연계과제)		
추진과제	세부사업	관련부처
추진과제명1	세부사업명1	00부
	세부사업명2	시군00과
추진과제명2	세부사업명1	00부
추진과제명1	세부사업명1	...
	세부사업명2	...
추진과제명2	세부사업명1	...

제6장 사업계획

제1절 기본 고려 사항

6-1-1.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비전, 목표,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사업 계획의 방향을 정하고 실천과제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한다.

(1) 사업 계획은 추진전략별로 작성하며, 하나의 추진전략은 2개 이상의 추진과제와 추진과제를 달성할 다수의 세부사업으로 구성한다.

① 추진전략별로 기본방향, 구상도(추진과제별 위치와 개략적인 설명의 모식도),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도, 총괄사업계획표와 이에 대한 설명을 요약하여 제시하고, 세부사업에 대한 실천계획을 제시한다.

② 실천계획은 세부사업별로 기본방향, 추진계획, 대상지역 및 계획 물량, 연계과제, 추진일정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필요시 법령, 유사사례와 구상도(시·군 전체 또는 읍·면)를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대상지역은 읍·면·리 단위 또는 확정된 계획의 경우에는 특정한 위치정보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 다만, 대상지역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과제를 추진하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특징 등을 설명한다.

6-1-2. 세부사업은 재원에 따라 농식품부・부처연계・지자체・공공기관투자・민간투자 사업으로 구분하며, 추진 전략과 추진 과제의 달성을 위해 세부사업 간 상호 연계성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세부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 전략 및 과제와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내 고유자원과 특성, 주민수요, 실현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위과제(목표, 추진 전략, 추진 과제)와 연계성, 필요성이 논리적으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기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사업 등을 단순 나열하는 방식의 사업계획은 지양한다.

(2) 시군 내 다른 농촌재생활성화지역과의 연계와 향후 연도별(시행 시기별, 예산확보 연도 등) 또는 단계별(1단계 사업 후 확대나 보완하는 경우) 사업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계획의 내용에 반영한다.

(3) 세부사업은 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부문별 계획(주거·정주 여건 개선, 농촌경제 및 일자리 기반 활성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제공, 농촌환경·경관의 보존 및 관리, 농촌환경 관리시설 정비)과 농촌특화지구의 이행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반영한다.

(4) 세부사업명은 사업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사업명으로 표시(국비 또는 지방비 사업에서 칭하는 세부·내역 사업명과 다르게 사업명 부여 가능)하고, 국비 또는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해당 국비 또는 지방비에서 칭하는 세부사업명(필요시 내역사업명도 포함)을 같이 표시한다.

(5) 농촌특화지구와 관련된 세부사업은 별도로 주(註)를 달아 농촌특화지구와 관련된 사업임을 표시한다. 다만, 농촌특화지구와 관련된 사업들을 별도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이 사업관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의 추진 과제로 별도 구분하여 작성한다.

(6) 세부사업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목표와 추진 전략,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적 활력도모를 위해 주요 거점시설(기설치 및 설치계획 시설 포함)과의 연계성이 높아야 하고, 다양한 기관(중앙부처, 지자체, 공기업, 민간기업)의 사업을 추가 연계·유치할 수 있으면서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구성한다.

① 세부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법에 따른 계획(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계획 등)에 반영되어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예정된 사업 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시행 중이거나 계획이 확정된 특구·지구, 공공·민간 개발사업 등의 사업을 검토한다.

② 세부사업은 시설의 설치와 기반을 조성·정비하는 물리적 사업(HW)과 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기타 물리적 사업이 아닌 비물리적 사업(SW)이 고루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③ 물리적 사업(HW)은 수요와 입지 조건, 사업시행 가능성, 관련 법령에 따른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하고, 해당 시설의 필요성과 사업 주체, 사업비, 규모 및 용도, 타 사업과의 연계성, 준공 후 운영 주체와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함께 제시한다.

④ 물리적 사업의 부지는 국·공유지나 공공건축물 등을 우선 활용하여 예산 절감과 사업효과 제고 방안을 함께 검토하되, 다수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은 이용자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서비스 거점과 연접한 부지를 먼저 검토한다.

⑤ ④에 따른 사업부지 확보 시 관계기관, 소유자와 사전 협의하는 등 부지확보계획(비용, 일정, 취득 방법, 취득 절차 등)과 관련 근거 서류(토지 권원 확보 등)를 별도로 첨부한다.

⑥ 비물리적 사업(SW)이 물리적 사업(HW)과 병행하여 추진되는 경우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야 하며, 물리적 사업이 완공된 후의 유지관리 방안까지 고려하여 계획한다.

(7) 세부사업은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산확보 가능성, 조성(준공) 시점에 따라 추진시기 등을 감안하여 시행 중인 사업, 단기사업(2년 내 시행), 중기사업(3년 이후 시행)으로 구분하고, 기본계획의 부합성, 시급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한다.

(8) 세부사업은 다음의 예시(사업계획의 구체화정도에 따른 시행계획 반영 방법)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의 구체성, 예산확보 여부, 투융자 계획 연도에 따라 시군의 실정에 맞게 개략화하거나 구체화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한다.

<세부사업 계획의 구체화 정도에 따른 시행계획 반영 방법>

사업구분 (투융자연도)	사업의 구체성	예산확보 여부			시행계획 반영 방법
		확보	확보가능	미확보	
시행 중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사업이 시행 중이거나 연내 시행 예정인 경우	○			• 사업명, 사업목적, 회계명, 소관부서, 사업기간, 투융자액, 등 구체적 표시
단기사업 (1~2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고, 1~2년 내 예산확보가 가능한 경우		○		•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내용, 소관부서, 사업기간, 추정 투융자액 표시
중기사업 (3년이상)	사업계획이 부분적으로 구체화 되었으나, 예산확보에 3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	• 사업명*, 사업목적, 구체화 되지 않은 사업내용, 사업기간, 추정투융자액 표시 * 사업명 미확정시 가칭 사용

(9) 세부사업별로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농촌특화지구의 사업계획(7-4-3-②)과의 연계성을 명확히 위하여, 각 세부사업에는 적정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구분한다.

6-1-3. 법 제17조에 따른 농촌협약 또는 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서 본 시행계획서를 신청서류로 활용하는 경우 [붙임1] 외에 법 제21조에 따른 통합지침이나 개별 사업지침에서 정하는 양식으로 관련 내용(부지확보 현황, 입지 규제 검토 결과, 시설 배치도, 사후관리 계획, 주민 동의 등) 또는 이와 관련한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제7장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제1절 지정 시 고려 사항

7-1-1 (도시·군 계획 연계) 도시·군 관리계획에서의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용도지역·지구의 정비 또는 보전 방향과 조화를 고려하되 농촌특화지구의 지정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14조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용도지구의 지정을 고려할 수 있다.

7-1-2 (절차의 투명성) 명확한 지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1) 농촌특화지구 지정 후보군에 대해 다양한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지정 필요성, 시급성, 지정 가능성, 현행 용도지역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토지 이용의 부조화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2) 주민협정 등을 통해 주민들이 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시 검토 결과를 주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7-1-3 (기능적 연계) 농촌특화지구는 다른 법의 지역·지구 등과 토지 이용 관리 목적이 상충되지 않고,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될 경우 농촌특화지구 간 상호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다.

7-1-4 (사전 협의) 농촌특화지구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시부터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 규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 기관(부서)과 사전에 협의하여 설정한다.

7-1-5 (기타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검토 시 농촌특화지구의 발전전략 및 관리 방안을 계획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농촌특화지구는 농촌 토지이용의 기능(주거, 산업, 축산 등)을 고려한 이격·구획 및 연계, 농촌환경관리시설의 정비·이전·재배치 및 집단화로 현재의 개별적 토지이용, 개발 행위, 시설입지를 계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시·군의 전체적인 중장기 목표, 추진전략과 농촌공간구조설정 및 도출한 후보군을 토대로 지정가능성, 지정의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농촌특화지구 유형별 발전전략과 관리방안에 대해 구체화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에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촌특화지구계획(도서, 관계기관 협의 자료 등을 포함)을 포함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계기관 협의 또는 의견청취를 거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다.

(4) (3)의 절차를 통해 법 제14조에 따른 의제처리 또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협의 또는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5)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계획(도서를 포함한 지정 및 관리계획을 말함)은 각각의 농촌특화지구별로 구분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구 간 연계성을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6)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으로 제시된 지역(읍 또는 면)을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기본계획에 해당 농촌특화지구의 육성방향이나 정책방향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는 지정할 수 없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점과 현재의 정책 여건 등이 변경되어 새로운 지역(읍 또는 면)에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 지정할 수 있으며, 이후 기본계획을 정비 또는 보완할 때 관련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7) 시·군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소규모 지구들이 난립하지 않도록 한다.

(8) 농촌특화지구는 토지이용 간 조화로운 공간적 관계를 정하여 농촌다움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 제6장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공간단위로 통합관리될 수 있도록 한다.

① 시장·군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촌특화지구 간 불필요한 중첩은 지양하여야 한다.

② 농촌마을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및 재생에너지지구는 생활공간과 산업적 토지이용 간의 공간적 부조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능적 분리와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①에도 불구하고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공장, 농촌위해시설을 포함하지 않으면서, 마을과 융복합시설이 혼재되어 발전하고 있는 경우)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중첩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농촌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공장, 농촌위해시설을 포함하는 경우),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둔다.

(9) 농촌특화지구 조성으로 마을이나 그 주변에 위치한 농촌위해시설을 이전・집단화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및 이전 부지 확보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

(10) 농촌특화지구 지정으로 특정건축물의 입지제한이 발생할 경우, 법령 등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지정 효력이 발생하기 전부터 있었던 기존 시설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2절 농촌특화지구의 종류

7-2-1. 농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할 수 있는 농촌특화지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 주민 등의 거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 서비스시설의 입지를 촉진하는 등 정주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2) 농촌산업지구: 농촌지역 내 공장, 창고, 제조업소 등 산업시설의 이전·집적화를 유도하거나 계획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축산지구: 가축사육 시설, 축산 가공 관련 시설 등을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사무 공간 등 서비스시설을 집약할 필요가 있는 지구

(5) 재생에너지지구: 에너지원의 환경친화적 전환 등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하여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시설을 집단화할 필요가 있는 지구

(6) 경관농업지구: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 등 경관 형성을 통하여 농촌관광자원 등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구

(7) 농업유산지구: 세계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농업유산 등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무형의 농촌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거나 관리·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8) 특성화농업지구: 농업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차별화된 재배방식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집약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농지의 규모화·집단화를 조성·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구

제3절 농촌특화지구 종류별 지정 기준

7-3-1. 농촌마을보호지구

(1)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할때에는 다음의 마을을 우선 검토한다.

① 배후마을을 대상으로 생활서비스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심지 또는 거점마을(기초거점 또는 기타 규모가 큰 마을 등)

② ①이외에도 장래에 정주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

③ 농촌다움과 농촌의 가치 및 자산 보전을 위해 보호가 필요한 마을이거나, 주민이 주민협정을 체결하는 등으로 지구 지정을 제안하여 시장·군수가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2)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농촌위해시설이나 난개발 시설의 무분별한 입지를 예방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인 토지이용 관리를 도모하며, 농촌특화지구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농촌마을의 가치와 자산을 보호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농촌마을의 매력을 강화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마을을 우선 지정한다.

(3)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국토계획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② 집단화된 주거지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면서, 지역 내 주민·토지소유자 등이 마을의 위해요소 관리, 경관 보전, 향후 발전 방향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 '정주환경 관리 계획'을 마련한 지역일 것

③ 농촌마을보호지구의 경계는 도로·지형·지물(地物)·필지경계를 고려하여 설정하되, 가급적 마을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 신규 주거지 수요와 농촌위해시설의 근거리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의 가장 외곽 주택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설정할 것

④ 시장·군수가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수와 지구밀도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하되, 아래 기준은 지역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가능 함

1. 주택 수: 30호 이상
2. 지구밀도: 지구 전체 면적 대비 대지면적 백분율이 30%이상이거나, 지구 면적 1만㎡당 주택 수가 10호 이상

(4) 농촌마을보호지구의 완충영역은 보호대상 마을 주변에서 개발 등 외부 환경변화로부터 농촌마을의 주거·경관·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을과 이격이 필요한 시설 또는 지역 사이에 완화·차단 기능을 갖는 구역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객관적 근거와 지역 여건에 따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완충영역은 마을의 가장 외곽 주택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 범위에서 설정하되, 마을 전체 둘레에 동일한 폭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는 없으며, 지역 여건에 따라 일부 구간은 제외하거나 폭을 달리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완충영역 설정이 오히려 주변 개발을 유도하는 등 완충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해 이미 유사한 기능이 확보된 경우에는 완충영역을 설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5) 농촌마을보호지구는 그 전부 또는 일부 지역을 「국토계획법 시행령」제31조제2항 제7호나목에 따른 보호취락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호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3의2 [참고 5]에 따른다.

7-3-2. 농촌산업지구

(1) 농촌산업지구는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임업용 시설 등 산업시설을 이전·집적화하여 농촌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농촌산업 육성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정한다.

(2) 농촌산업지구 지정 시에는 다음의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

①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 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이전(移轉) 및 집단화를 통해 농촌산업지구의 기반이 일정수준 이상으로 조성된 지역

② 농작물 재배를 위한 시설농업(스마트농업시설, 수직농장 등)이 집단화되어 있어 향후 주변 지역 활성화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③ 기타 시장·군수가 농촌산업 육성 및 농업의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관련 기반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성된 지역

(3) 권장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농림지역에 농촌산업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농·임업용 시설에 한정한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너목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등, 동 시행령 제17호에 따른 공장

②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물류시설

③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연구시설

④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농촌산업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국토계획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다만, 녹지지역의 경우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 시설을 집적화하는 경우로 한정

② 농촌마을 주변에 개별 입지하고 있는 공장, 창고, 제조업소, 농업용 시설 등 소규모 시설의 이전(移轉) 및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③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④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⑤ 농촌산업지구는 30,000㎡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7-3-3. 축산지구

(1) 축산지구는 가축사육 시설, 축산가공 관련 시설 등이 집단화되어 있거나 집단화함으로써 축산업을 계획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2) 축산지구 지정 시에는 다음의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

① 스마트축산단지로 조성되어 가축 사육시설. 축산물 가공시설 등이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② 가축 사육시설 및 축산물 가공시설이 집적·집단화되어 있고, 기존 시설의 개보수나 부지확장 등 기능보완과 추가 사육시설 이전 유치 등을 통해 집단화가 가능한 지역

③ 기타 시장·군수가 농촌마을 주변의 축사 및 축산관련 시설 등의 이전·집적화가 용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축산지구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3) 권장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에 따른 동물 관련 시설

②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의 자원화·처리·관리 등 시설

③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축산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② 축사 등 가축 사육시설, 축산물 가공시설 및 자원화시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자원화시설을 말한다) 등 축산업 관련 시설을 집적하여 건축할 수 있는 지역일 것.

③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④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⑤ 축산지구는 30,000㎡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7-3-4. 농촌융복합산업지구

(1)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농촌마을의 자원을 활용한 농업생산·제조·가공시설 및 체험시설 등 농촌융복합시설을 집약적으로 조성하여 농촌주민의 소득증대와 농업의 고부가가치화, 농촌경제 활성화, 농촌관광 확대 등을 위해 지정할 수 있다.

(2)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시에는 다음의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

①「농촌융복합산업법」 제2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 중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농촌체험휴양마을 또는 농어촌민박 등이 밀집된 중심지역으로서, 일부 기능 보완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지역

②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반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조성되어 있거나, 일부 기능보완을 통해 그 육성과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지역

③ 기타 시장·군수가 농촌융복합 관련 시설의 이전 또는 집단화가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농촌융복합산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3) 권장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생산, 제조・가공・유통・관광 등의 시설

②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농촌융복합산업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국토계획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② 농촌융복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농업생산, 제조・가공 및 유통・관광 등의 시설 집적화가 가능한 지역일 것

③ 제조・가공 공장 또는 농촌위해시설을 포함시에는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④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⑤ 농촌융복합산업지구는 30,000㎡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7-3-5. 재생에너지지구

(1) 재생에너지지구는 농촌마을과 산지 인근에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이 소규모, 산발적으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집적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효율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주거 여건, 영농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할 수 있다.

(2) 재생에너지지구 지정 시에는 다음의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

① 재생에너지 수요가 큰 산업단지 등이 인근에 위치하면서 재생에너지원이 충분하고, 인허가 및 전력계통 연계가 용이한 지역

② 기타 시장·군수가 재생에너지시설의 집적화가 가능하고, 재생에너지지구 소재 마을에 이익을 공유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높은 지역으로서, 재생에너지지구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권장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중 탄소중립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설비

② 재생에너지를 생산, 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

③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재생에너지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국토계획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일 것

② 관련 법령·조례·행정규칙 등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태·경관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경관과의 조화·균형을 확보하면서 환경친환적 에너지 생산이 가능한 지역일 것

③ 농지·하천 등의 환경과 주변에 형성된 정주 여건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지역일 것

④ 농촌마을보호지구와 충분한 거리를 둘 것

⑤ 재생에너지지구는 50,000㎡ 이상의 면적으로 지정

7-3-6. 경관농업지구

(1) 경관농업지구는 동종·유사 작물의 집단화를 통한 경관 형성을 기반으로 농촌의 경관과 환경적 특성을 보전·관리하여 농촌다움의 가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경관농업지구 지정 시에는 다음의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

①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경관농업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유채, 해바라기 등 동종·유사 작물이 집단화되어 농촌경관 형성과 관광·체험자원 활용이 가능한 지역

② 기타 시장·군수가 동종·유사 작물이 집단화되어 농촌경관 형성과 관광·체험자원 활용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경관농업지구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권장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촌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문편의시설

② 경관농업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유통·가공·판매시설과 휴식 및 간단한 식음이 가능한 휴게음식점점

③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② 경관작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른 경관작물을 말한다)을 집단화하여 재배하는 농경지 및 그 주변 지역으로서 우수경관의 관리 및 보존이 필요한 지역일 것

③ 계절별 경관 형성, 관광·체험 자원화 가능성 및 주민 참여·관리 역량 등을 갖추어 다음의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일 것

1. 유채·해바라기·메밀·코스모스 등 계절별 경관작물의 집단적 재배되어 차별화된 농촌경관 형성이 가능한 지역

2. 경관작물 재배와 관광자원 관리를 위한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등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 있고, 축제·체험 등 관광운영 경험을 보유한 지역

3. 형성된 경관이 농촌관광·체험·축제·농산물 브랜드화 등으로 활용·확장 가능하며, 교통접근성·방문객 수용시설 등 관광 인프라가 확보된 지역

4. 경관농업을 통해 지역 브랜드 가치제고, 농산물 판매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근 권역으로의 파급효과가 기대되는 지역

7-3-7. 농업유산지구

(1) 농업유산지구는 전통농업 자원의 훼손과 단절을 예방하고, 체계적인 보전·활용 관리를 통해 농업유산의 가치를 보전하고 지역경제와 정주여건을 증진하며, 농업생태·지형·경관 등 농촌의 환경적 특성을 보전하여 농촌다움의 가치와 일상적 농촌경관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농업유산지구 지정 시에는 다음의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

①「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 삶의질법”이라 한다)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중에서 기존 유산지정지역의 핵심지역

② 기타 시장·군수가 경관·생태·문화적 가치 등 농업유산의 보전가치가 높아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농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와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유산지구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3) 권장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농업유산의 보전·전승 및 활용에 직접 기여하는 안내·해설, 교육·전승, 보전·관리 시설 또는 방문 편의시설

② 농업유산지구의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유통·가공·판매시설과 방문객의 휴식 및 간단한 식음이 가능한 휴게음식점

③ 그 밖에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시설

(4) 농업유산지구의 지정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① 「국토계획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으로 한정한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일 것

② 「농어업인삶의질법」 제30조의2에 따른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에 등재된 세계중요농업유산 지정지역, 또는 그 밖에 농업적・생태적・지식적・문화적・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어 종합적인 토지이용 관리가 필요한 지역일 것

③ 농업기술, 농업경관, 공동체문화 등 고유한 자산의 유지・전승 가능성을 갖추어 다음의 요건을 일정 수준 이상 충족할 수 있는 지역일 것

1. 농업유산 보전과 활용을 담당할 주민협의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조직이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지속적 활동과 운영 실적을 보유한 지역

2. 농업유산이 관광・교육・지역브랜딩・6차산업 등으로 확장・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과 파급효과를 가진 지역

3. 농업유산의 단순한 보존을 넘어 주거지·농지·하천 등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농촌마을과 유산을 연계하여 관광·교육·브랜딩 등으로 발전이 가능한 지역

4. 농업유산지구 지정 효과가 인근 권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지역

제4절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절차

7-4-1. 농촌특화지구의 검토

(1) 시장・군수는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을 토대로, 기초조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지정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시장・군수는 〔별표2〕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검토하여야 하는 법률(예시)'을 우선 검토하고, 관련 부서, 기관 등과 협의하여 지정에 필요한 법령의 추가적인 검토 및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 중 축산지구를 지정코자 할 경우, 축사의 이전·재배치·집적화를 위한 부지확보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시·군의 조례로 일정 구역을 지정·고시하는 '가축사육 제한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 해제를 동시에 검토하여야 한다.

(4) 시장·군수가 농촌특화지구로 지정·고시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지정·결정·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의제됨에 따라 지정 시 규제 개선 및 규제특례 활용 방안으로 검토한다.

①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계획관리지역 지정 또는 변경(「국토계획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함)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② 「국토계획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③ 「국토계획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5)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농지법」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는 경우(특성화농업지구로 지정하여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전용허가 및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협의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① 농업진흥지역의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지 않는 지역을 우선 검토하며, 가능할 경우 계획관리지역 등 농지 훼손이 적은 지역의 활용을 우선 고려

② 불가피하게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편입규모를 최소화하고, 진흥지역의 중심부 편입을 지양하며, 향후 농지 훼손 우려가 큰 구역은 조정하여 검토

7-4-2. 농촌특화지구의 경계설정

(1) 모든 농촌특화지구는 도로·지형(하천, 임야, 지적경계선 등)·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물(地物)을 고려하여 설정하되, 농촌마을보호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연속된 주거지가 가급적 분할되지 않도록 한다.

(2) 농촌마을보호지구는 주거환경 보호을 위해 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정한 완충영역을 포함하여 설정한다.

(3)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재생에너지지구를 지정할 때는 미래 신규 주거지 수요와 농촌환경관리시설의 근거리 입지 제한 등을 고려하여 마을의 가장 외곽에 있는 주택의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적정한 이격거리를 포함하여 설정한다.

7-4-3. 농촌특화지구의 승인 요청

(1) 시장·군수는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지정계획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내용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시행계획 승인 시 함께 처리할 수 있다.

① 농촌특화지구 지정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14조에 따른 의제 활용,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부서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하도록 한다.

1. 지정 목적 및 필요성
2. 위치 및 면적
3. 현황 및 여건(지구 내 토지이용 및 주요 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작성)
4. 지정조서 및 지정도서(별표 4)
5.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협의완료시 결과 요약, 미시행 시 향후 계획 제시)

② 농촌특화지구 관리계획은 지구 지정 후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농촌특화지구 육성방향(지역의 여건 및 특성 포함)
2. 농촌특화지구 사업계획*

* 종합구상도, 사업기간, 총사업비 및 세부사업별 사업명, 위치, 사업비(백만원), 제6장 사업계획의 세부사업과의 연계를 나타내는 세부사업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제시

3. 주민 등 관계자 의견수렴 결과
4. 농촌특화지구에 대한 주민협정의 체결 결과(주민협정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규제개선 및 규제특례 활용방안
6. 기대효과

(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시행계획(안)에 농촌특화지구 지정내용이 포함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참고8]의 내용을 작성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지정 필요성 및 타당성

② 지정기준 준수, 기본계획 연계성 및 정책 부합성

③ 농업진흥지역 등 농지 활용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3) 농림축산식품부 총괄과(농촌공간계획과)는 (2)에 따라 요청받은 농촌특화지구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각 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지구 관련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시행계획(안)의 수립·변경에 대해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한다. 승인에 관한 절차는 8-5(시행계획 승인)에 따른다.

(6)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확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특화지구에 관한 사항은 고시하여야 한다.

(7)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6)에 따라 농촌특화지구를 지정·고시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에 관한 사항을 농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절 주민제안, 주민협정 및 주민협의회

7-5-1. 농촌특화지구의 주민 제안

(1) 주민은 정주여건 개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보호 등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2) 주민이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포함한 제안서와 대상 토지 면적(국유지·공유지는 제외)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

②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③ 농촌특화지구의 정비 및 관리 방향

④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협정을 체결한 경우 그 내용

⑤ 농촌특화지구의 도서 등(5-2-4의 총괄 사업계획표 및 종합 사업계획도를 말한다)

⑥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⑦ 그 밖에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2)에 따른 동의서 제출 시 다음 각 목에 대한 동의는 서면동의서에 토지 등 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하며,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여권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23조에 따라 협정체결자가 주민협의회 구성에 동의하는 경우

② 영 제9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 지정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

③ 영 제11조에 따라 협정체결자가 주민협정 인가·변경·폐지를 위한 신청서 제출에 동의하는 경우

(4) 주민이 (3)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등 필요서류를 함께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동의한 내용과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가 특화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제안서를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제안의 반영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7-5-2. 주민협정

(1) 농촌특화지구 내 주민, 토지 소유자 등은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개발 및 관리를 위해 주민 자치규약 등 마련·이행을 위한 협정(이하 "주민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2) 주민협정서에는 협정체결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농촌특화지구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다음 각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① 주민협정의 명칭

② 해당 농촌특화지구의 위치 및 면적

③ 주민협정의 목적

④ 주민협정의 내용

⑤ 협정체결자 및 주민협의회 구성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⑥ 주민협정의 유효기간

⑦ 주민협정 위반 시 제재에 관한 사항

⑧ 그 밖에 주민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협정체결자 또는 주민협의회 대표자는 주민협정의 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협정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하며, 시장·군수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통보한다.

(4) 시장·군수는 주민협정 인가 시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5) 법령이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장·군수가 조례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7-5-3. 주민협의회

(1) 협정체결자는 주민협정의 체결 및 추진을 위한 자율적 주민대표기구로서 대표자를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는 주민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주민협의회는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신청(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하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절 농촌특화지구 계획 및 도서의 작성

7-6-1. 농촌특화지구의 계획은 지정계획 및 관리계획으로 구분하여 7-4-3의 내용을 작성하며, 관계기관 협의 또는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작성할 수 있다.

(1) 농촌특화지구 지정계획은 지정하고자 하는 농촌특화지구의 목적과 필요성, 위치 및 면적, 지정도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시한다.

(2) 농촌특화지구 관리계획은 지구 지정 후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육성계획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구상도 및 사업계획 등을 함께 제시(붙임2 참고)한다.

7-6-2. 농촌특화지구의 도서(圖書)는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1) 농촌특화지구지정에 필요한 도서는 다음의 도서는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하고, 관계기관 협의·심의회 등에 필요한 도서는 추가한다.

① 지형도면 고시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농촌특화지구를 명시한 도면

② 지구결정도: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구의 결정내용을 표시한 도면

③ 지적도: 토지의 경계

④ 완충영역 설정도(농촌마을보호지구에 한함): 마을보호지구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설정된 완충영역을 표시한 도면

⑤ 지구계 결정사유도(필요시): 지구지정에 필요한 용도지역, 지정기준, 지형 등을 검토한 내용을 정리한 도면과 설명자료

(2) 도서의 축적은 5천분의 1을 기본으로 작성하고 범례를 표시하며, 필요한 경우 다른 축척의 도면을 추가하여 보완설명 할 수 있으며, 작성한 도서는 칼로 긁거나 채색 등으로 수정하지 아니한다.

(3) 농촌특화지구 계획선, 채색 및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① 신설·변경 계획은 적색선으로 표시하고, 변경시 기존 계획선은 흑색선으로 표시한다.

② 동일 지구가 2매 이상의 도면으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각 매장마다 번호를 기입한다.

③ 농촌특화지구별(다른 지구와 중복되는 경우 포함)로 구분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아래 예시에 따른 채색 및 표시방법으로 작성하고, 필요시, 다른 색상 또는 표시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특화지구의 지적 및 지형이 식별될 정도의 채색 농도와 표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구 분	예 시 도	채색 및 표시방법	구 분	예 시 도	채색 및 표시방법
농촌마을 보호지구		바탕 : 연한 노랑 사선 : 진한 노랑 (사선경사 −45 °) 글씨 : 빨강	재생에너지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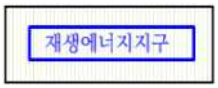	직선 : 짙은 녹색 글씨 : 파랑
농촌산업 지구		바탕 : 연한 보라 글씨 : 파랑	경관농업 지구		사선 : 초록 (사선경사 45 °) 글씨 : 초록
축산지구		바탕 : 짙은 회색 글씨 : 파랑	농업유산 지구		바탕 : 초록 글씨 : 초록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사선 : 회색 (사선경사 45 °) 글씨 : 파랑			

제8장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제1절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계획

8-1-1. 농촌공간정책심의회

(1) 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의 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과 시장·군수는 관할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정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정책심의회를 운영한다.

(2) 시·도에서 설치한 광역정책심의회와 시·군에서 설치한 기초정책심의회는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광역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② 기초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지역의 주요 시책,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8-1-2.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1) (역할) 시·도지사는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이하 "광역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시장·군수는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이하 "기초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농촌공간계획의 수립과 이행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① (광역지원기관 업무) 시·군의 계획수립 방향 조정, 광역심의위원회의 심의 기준 관리, 시·도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기초지원기관 관리 및 지원, 지역협의체

구축・운영 지원,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그 밖에 시·도지사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초지원기관 업무) 기초지원기관은 시·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관련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연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지원, 사업계획 수립 지원, 주민협정 체결 및 주민협의회 구성 지원, 주민제안 지원 업무, 시·군 농촌공간 지역개발 관련 역량강화 등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구성)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은 해당 지역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분야 전문인력 3명 이상을 갖춰야 하고 가급적 현장활동가 중심으로 구성한다.

① 지역 또는 농촌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지원기관, 센터 등이 운영 중이거나 설치가 예정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것을 권장하며, 통합이 어려운 경우 기능적 연계 강화 방안을 강구한다.

② 다른 기관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 방식과 절차, 시기 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정할 수 있다.

(3) (운영)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은 시·도(광역지원기관에 해당)와 시·군 관할 구역 내의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이 직접 운영하더라도 민관협치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

① 광역지원기관과 기초지원기관은 공공성,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농촌공간계획의 수립과 이행지원에 관한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광역지원기관 및 기초지원기관 지정기준과 설치 근거 등에 관한 사항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여 조례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지원기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8-1-3. 지원조직(행정전담조직) 및 행정협의회

(1) 시장·군수는 농촌공간계획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1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추진과 관련한 관계기관·부서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행정업무를 전담하는 지원조직과 지자체 내 시행계획의 수립 관련 부서 간 협의기구인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지원조직은 최소 팀(계)조직 이상의 전담부서로 운영하며,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① 임기제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무기계약직, 기간제)의 경우에도 농촌지역개발 관련 민간 전문가 또는 활동가로 채용되어 농촌협약 등 업무를 담당할 경우에는 전담조직 구성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농촌협약을 추진하는 시·군의 경우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년 통보되는 농촌협약 추진계획 및 '농촌협약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통합지침'에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원조직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또는 공무직원(무기계약직, 기간제)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지원조직은 행정협의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업무 간 조정과 소통, 협조 등을 담당한다.

8-1-4. 주민협의체 및 지역전문가의 참여

(1)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시 구성한 주민협의체를 활용하거나,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새로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기존에 구성된 주민협의기구와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시장·군수는 지역의 현안이나 문제점을 잘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지역활동가, 지역전문가들이 충분히 계획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원조직은 행정협의회의 간사 역할을 수행하며, 관련 업무 간 조정과 소통, 협조 등을 담당한다.

<추진체계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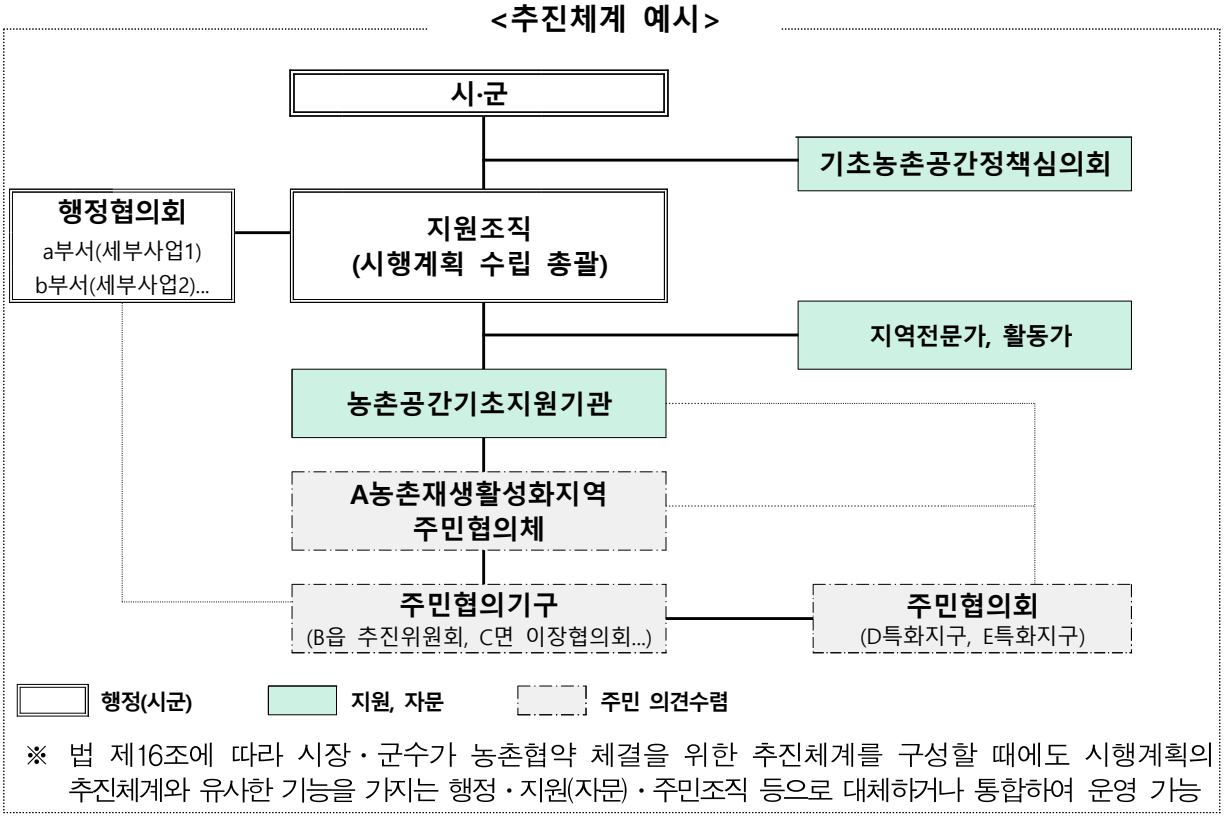

※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농촌협약 체결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성할 때에도 시행계획의 추진체계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행정·지원(자문)·주민조직 등으로 대체하거나 통합하여 운영 가능

제2절 재정 투자계획

8-2-1. (재원조달 계획) 세부사업별 재원의 주체와 재원의 연차별 확보 방안 등 종합적인 재원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1) 토지매입비, 설계비, 공사비, 사회·경제프로그램 운영·관리비 등 항목에 따라 필요한 예산 소요를 산출하고, 해당 소요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한다.

(2)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한다.

(3) 재원 조달 계획 내용 중 국가지원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과 사업의 명칭(세부사업명, 필요시 내역사업명)을 명기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재정지원 가능 여부와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여부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한다.

(4) 시군의 재정 상황 및 추이를 전망하고,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마련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때 최근 5년간 연도별 예·결산 현황, 중기지방재정계획(회계별, 연도별, 분야별 등)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연차별 투자계획 예시>

재원구분	추진과제	세부사업 (내역사업명)	시행주체 (주관부서)	사업비(억원)					연차별 계획												
				계	국비	지방비	공기업	민간	기투입	1년차				2년차				.....			
										계	국	지방	....	계	국	지방	....				
합 계			-																		
농식품부	(소 계)																				
	추진과제 1	(소 계)																			
		세부사업 1	00과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추진과제 2	(소 계)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부처연계	(소 계)																				
	추진과제 1	(소 계)																			
		세부사업 1	산림소득과 (산림청)																		
		세부사업 2	주택과 (국토부)																		
		세부사업 3																			
지자체	추진과제 1	(소 계)																			
		세부사업 1																			
		세부사업 2																			
		세부사업 3																			
공기업	추진과제 1	(소 계)																			
		세부사업 1																			
⋮	⋮	⋮																			

8-2-2. (예산집행계획) 사업의 시급성, 실현 가능성과 농촌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사업 간 연계성 등을 고려해 세부사업의 연차별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한다.

제3절 성과관리 계획

8-3-1.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세부 사업의 진행정도와 성과관리를 위해 성과관리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점검·모니터링·평가하는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한다.

8-3-2. 성과지표는 목표 달성 여부와 사업의 진행 정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적정한 지표를 발굴한다. 지표는 결과(Outcome)보다는 투입(Input), 과정(Process), 산출(Output) 중심의 지표를 사용하고 목표치를 제시한다.

8-3-3. 성과지표 선정 시 아래 <성과지표 예시>의 3개 분야와 관련된 세부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분야별로 제시한 공통지표를 반영하고, 자율지표는 필요시 시·군이 선택하여 반영한다.

<성과지표 예시>

분야	공통지표	자율지표
어디서나 살기좋은 삶터	•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 수 • 생활서비스시설 이용자 수 • 대중교통 취약지역(마을) 비율	• 빈집·폐가 정비 수 • 주거지 인근 위해시설 정비 건수 • 농촌특화지구 지정수 • 생활서비스 시설 이용자 만족도 • 대중교통취약지(행정리) 이용자 만족도
다양한 기회가 있는 활기찬 일터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 경영체 수 •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수	•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지역주민 고용자수
국민모두에게 매력적인 쉼터	• 경관농업·농업유산지구 지정 수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객 수 • 현장 지원조직 또는 공동체 조직종사자 수 (사회적 협동조합, 도농교류 조직 등)	• 경관직불농업 참여가구 수 • 농촌체험휴양마을 관광객 만족도 • 사회적협동조합 수 • 주민협정 체결 지역 수

8-3-4. 추진상황 점검체계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와 성과지표 운영·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각 지표별 성과목표에 대한 측정 방법 및 시기, 평가 주체 및 평가 방법 등을 제시한다.

제9장 계획수립 절차

제1절 시행계획 수립

9-1-1. 시장·군수는 행정전담조직인 지원조직과 기획・예산・집행 및 관리 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를 위해 설치한 행정협의체를 통해 이행 가능하고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

9-1-2. 시장·군수는 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군의 게시판 및 인터넷을 통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주민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9-1-3. 각 유관기관 및 관련 부서는 협의를 통해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들과 시행계획과의 연계성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9-1-4. 작성된 시행계획(안)을 확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확정한다. 다만,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농식품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9-1-5. 시도지사(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가 시군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법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및 기후부장관과 협의하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절 주민 참여 제고

9-2-1. 시장·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 과정에서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9-2-2. 시장·군수는 주민들에게 시행계획의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에 대한 이해, 주민의 자율적인 규제와 협정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9-2-3. 시장·군수는 주민이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농촌지역의 경제 활성화 및 환경·생태보호 등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검토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절차는 7-5-1(농촌특화지구의 주민 제안)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또는 “농촌특화지구”는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 본다.

제3절 의견 청취

9-3-1. 시장·군수와 승인권자인 시·도지사는 계획수립을 위한 모든 과정에서 주민 상호 간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갈등의 조정과 해소에 필요한 협의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9-3-2. 시장·군수는 시행계획 수립 시 법에 따라 관계 시장·군수, 지방의회, 관계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절 공청회

9-4-1. 시장·군수는 수립한 시행계획(안)에 대해 농촌공간계획 분야 전문가와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9-4-2. 시장·군수는 공청회 개최 시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 개최 목적

(2) 공청회 개최 예정일시 및 장소

(3) 계획(안)의 내용

(4) 그 밖에 계획수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9-4-3.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이 시행계획(안)의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공청회에 참석하여 시장·군수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9-4-4. 시장·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안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시행계획(안)에 반영하고,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안)의 승인신청 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미조치 사유 등 의견청취 결과 요지를 첨부한다.

제5절 시행계획 승인

9-5-1.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으려면 시행계획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 수립·변경 승인신청 공문

(2) 공간구조, 토지이용체계, 농촌생활서비스시설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

(3) 주민 등의 의견청취 결과

(4)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5) 시행계획(안)

(6) 그 밖에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9-5-2.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신청한 시행계획(안)의 수립·변경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특화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과 협의하고, 필요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과 협의한다.

9-5-3.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제출한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농식품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후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조정·보완하여 반영하고, 광역 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한다.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절 시행계획 확정 등

9-6-1.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는 시·도지사가 승인한 시행계획을 지체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9-6-2. 시장·군수는 승인된 시행계획을 토대로 시행계획서를 보완한 후 시·도지사의 사전검토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서를 색도 인쇄하고, 최종 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유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9-6-3. 시행계획서에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작성 기간) 시행계획 수립에 따른 최초 구상부터 최종 시행계획서 작성 시까지의 연혁

(2) (수록 대상) 작성 기간 중에 있었던 최초 구상, 용역의 발주 및 집행 관계기관과의 협의, 각종 위원회 등 회의, 공청회 또는 주민 의견 청취(열람), 관계 법규 또는 지침, 질의회신 등 당해 시·군의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되는 사항

(3) (수록 내용) 일시, 장소, 관계기관 및 참석자명, 주된 회의 내용, 주민 의견 및 해당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미조치 사유 포함), 질의회신(발췌) 등

제10장 사업의 시행 절차

제1절 사업시행자 및 사업계획 수립

10-1-1. 시장·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4)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가 설립한 조합

(5)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 지역 주민 단체

10-1-2. 법 제27조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 고시되기 전부터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그 시행이 확정된 계획이 사업계획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자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본다.

10-1-3. 시장·군수는 10-1-1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업시행자의 부도·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

10-1-4. 지방자치단체, 조합, 지역주민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10-1-1의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

10-1-5.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의 목적

(3) 주요 사업내용

(4) 사업비의 명세

(5)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6) 사업시행기간

(7) 사업시행자

(8) 사업효과

(9) 세부설계도서

(10) 유지관리 및 처분계획서

(11) 수용 또는 사용 토지 등의 명세서(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12) 사업면적에 관한 사항

10-1-6. 시장·군수(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다)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법 제30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 수용이나 사용(「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관련), 법 제43조에 따른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에 대한 검토(참고3)로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절 사업계획 승인

10-2-1.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사업계획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와 다음 각호에 대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정관 또는 조직 운영 규정에 관한 서류 사본

(3) 최근 3년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0-2-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없이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사업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계산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10-2-3.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제33조의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와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10-2-4. 시장·군수는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계획을 고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2-5.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 법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의 의제, 참고4)에 따라 인허가 등의 절차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표 1〕 항목별 세부 내용 (예시)

※ 목차와 항목별 세부 내용은 시군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목차	항목별 세부 내용
1.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 시행계획의 수립 배경 및 목적에 대해 기술 나. 계획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 기본계획에서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제시한 발전전략(추진과제, 농촌특화지구 관련 사항 포함)을 향후 5년간 추진하기 위해 구체화하는 것이 시행계획의 내용적 범위임 다. 계획의 수립 경과 ☞ 계획 수립에 관여한 각 기관별 역할, 주민의견 수렴 등 계획 수립 경과, 계획수립 과정 등을 기술
2. 현황 및 여건 분석	가. 기본계획 분석 ☞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해 기본계획에서 설정하거나 수립한 전략을 분석하여 해당지역의 특징을 파악하되, 현재의 문제점뿐 아니라 향후 5년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 ☞ 각 항목별로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특징과 시사점 도출하고 소결을 제시하며, 항목별로 통합하여 작성하거나 이슈별로 구분하여 작성 가능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발전전략과 방향, 과제의 목적에 대해 파악하고 '나. 지역의 여건 및 특성'에서 추가로 조사하거나 분석이 필요한 사항을 파악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지역의 핵심 이슈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할 시사점을 도출하고,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 내용을 6쪽(A4기준) 이내로 핵심사항만 요약하여 정리 1) 공간구조 분석 및 설정 2)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발전전략 3) 농촌특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 4) 부문 계획의 추진전략, 추진과제 및 세부추진과제 나. 지역의 여건 및 특성 ☞ 기본계획 분석 핵심이슈로 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기본계획의 분석내용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여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각 항목별 공간적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소결을 제시 ☞ 항목별로 필요에 따라 적정공간 단위(농촌재생활성화지역 전체 또는

목차	항목별 세부 내용
	읍·면을 기본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리 또는 일부지역 격자단위 분석)로 분석 필요 ☞ 사업계획의 세부사업과 직접 관련된 내용의 분석에 집중하고, 관련이 적은 항목은 조사나 분석을 축소하거나 삭제 1) 지역의 특성 ① 공간적 입지 ② 인구 ③ 농촌경제 및 일자리 ④ 토지이용 ⑤ 주거 및 정주여건 ⑥ 생활서비스 ⑦ 농촌공동체 ⑧ 농촌환경 및 경관보존 2) 농촌환경관리시설 및 농촌위해시설 ☞ 주거지, 정주여건 및 농촌환경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성 검토 ☞ 기본계획의 현황분석에서 도출한 문제와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에 대한 추가적인 현지조사 등으로 현황을 구체화하고, 실제 농촌특화지구로 지정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여건 등을 분석하고 의미를 제시 3) 행정협의회,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한 지역 수요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내 읍·면 단위의 단계적 주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 인터뷰, 설명회 등) 내용 제시 및 종합분석 ☞ 행정협의회 및 주민 의견에 대한 분석하여 사업으로 반영 필요성 등 검토 ※ 기초심의회, 지역전문가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 필요 다. 종합분석 및 추진과제 도출 1) (분석 결과 제시) 공간적·기능적 관련성이 높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내용과 항목 등을 종합·연계하여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분석 결과 제시 2) (개선과제 도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기본계획의 이행, 현재의 문제를 개선하고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과제 도출 3) (종합분석 활용)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강점, 약점, 기회요인, 위기요인 등을 파악하기 위해 SWOT분석 등 종합분석기법 활용, 우선 추진할 과제 선별 4) (추진과제 확정) 선별된 과제 중에서 유사하거나 연계가 가능한 과제들은 통합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비전, 목표와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과제 도출 ☞ 추진과제는 세부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하며, 현안해결과 미래에 예상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제로 구성할 필요

목차	항목별 세부 내용
3. 기본구상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비전 및 목표,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추진과제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 기본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 가. 비전 및 목표의 설정 * 비전이 도출된 과정과 비전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고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3개 내외로 제시 ☞ 설정한 목표별로 설정 배경, 목표 달성에 대한 추진방향 등을 1~2쪽으로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목표별 구상도를 도식화하여 이해를 돕도록 함 나.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 * 비전, 목표, 추진전략 및 추진과제와의 관계와 체계를 보여주는 비전체계도를 도식화하여 제시 다. 성과지표 설정 * 종합성과지표 중 공통지표는 해당 분야(삶터, 일터, 쉼터)의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지표로 반영 나. 농촌공간 발전 방향 ☞ 기본계획의 '농촌공간구조 설정'에서 제시한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거점, 축, 권역 및 농촌공간의 이용방향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 구체화 제시(주요 읍면별로도 제시 가능) ① 시행계획으로 거점, 축, 권역, 농촌공간의 이용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지는 않으나,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해당 지역의 거점, 축, 권역의 육성방향과 농촌공간의 이용방향에 대해 5년동안 이를 실행할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 ②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를 활용하는 이행방안 구체화 제시 1) 거점, 축, 권역의 육성 방향 ☞ ① ② ③을 분리하여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통합하여 작성 가능 ① 거점, 축, 권역의 육성 방향 ② 생활서비스 공급 거점의 육성 방향 * 상위거점, 중위거점, 하위거점에 대해 중심지의 기능과 거점간 위계 변화를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 제시 ③ 읍·면별 내부공간 발전 방향 * 전체 또는 주요 읍면에 대해 거점, 축, 권역에 대한 육성 및 발전방향 제시 2) 농촌공간의 이용 방향 *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해당 지역에 대한 계획적 재배치, 집단화, 기능강화 및 축소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 제시 * 주요 읍면별 내부 공간 발전방향과 이행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이해를 돕기위해 읍면별로 구상도 추가하여 설명 가능

<table>
<tr><th>목차</th><th>항목별 세부 내용</th></tr>
<tr><td>4. 세부사업 발굴 및 선정</td><td>
가. 세부사업의 발굴 및 선정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부문별 계획에 근거한 농촌재생활성화지역 내 추진가능한 세부사업을 연계하는 것으로 ‘2. 현황 및 여건 분석’에서 도출한 추진과제를 실제로 이행할 세부사업을 발굴 및 확정
☞ 세부사업은 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등 다양하게 시행계획에 반영 가능
1) 세부사업 선정 기준 및 과정
* 발굴한 세부사업에 대해 그 선정과정 등에 대해 기술
2) 세부사업 검토 및 선정
☞ 검토내용과 선정 결과에 대해 제시
나. 기본계획 과제별 추진사업
☞ 기본계획에서 추진전략별로 제시한 세부추진과제에 대해 시행계획에서 계획한 세부사업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도를 제시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전략별로 시행계획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개략 제시
※ 기본계획에서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과 연계되는 모든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시행계획의 사업계획과의 관계설명
<예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사업 관계도>
<table>
<tr><th colspan="2">기본계획</th></tr>
<tr><th>추진전략</th><th>세부추진과제</th></tr>
<tr><td rowspan="2">추진전략명1</td><td>세부추진과제명1</td></tr>
<tr><td>세부추진과제명2</td></tr>
<tr><td>추진전략명2</td><td>세부추진과제명1</td></tr>
</table>
⇨
<table>
<tr><th colspan="3">시행계획(기본계획과 연계과제)</th></tr>
<tr><th>추진과제</th><th>세부사업</th><th>관련부처</th></tr>
<tr><td rowspan="2">추진과제명1</td><td>세부사업명1</td><td>00부</td></tr>
<tr><td>세부사업명2</td><td>시군00과</td></tr>
<tr><td>추진과제명2</td><td>세부사업명1</td><td>00부</td></tr>
<tr><td rowspan="2">추진과제명1</td><td>세부사업명1</td><td>...</td></tr>
<tr><td>세부사업명2</td><td>...</td></tr>
<tr><td>추진과제명2</td><td>세부사업명1</td><td>...</td></tr>
</table>
1. 추진전략명1
① 세부사업명1: 00에00을 00개소 조성하여 00달성
② ...
2. 추진전략명2
① 세부사업명1: 00에00을 00개소 조성하여 00달성
② ...
</td></tr>
<tr><td>5. 사업 계획</td><td>
가. 개요
1) 총괄사업계획
☞ 총괄사업계획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술
2) 종합사업계획
☞ 종합사업계획도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기술
☞ 사업 계획은 추진전략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사업으로 구성하며, 지침에서 제시한 세부사업 계획(서식)에 따라 2페이지 이상 작성
</td></tr>
</table>

목차	항목별 세부 내용
	* 농촌협약지침 또는 개별사업지침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나, 양식,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작성가능하나, 공모신청시 보완하는 방식으로 추진 필요 ☞ 농촌특화지구와 연계된 세부사업은 다른 세부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수립할 필요 ☞ 추진전략명과 추진과제명은 시·군의 특성이 드러나도록 발굴한 세부사업의 유사한 성격을 포괄할 수 있는 명칭으로 제시 나. 추진전략명1 1) 기본방향(추진전략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제시) 2) 추진전략 구상도 및 관계도 - 추진과제별 위치와 모식도(추진과제 또는 세부추진과제의 개략적 대상범위(위치), 이행 목표(개수) 등을 파악하기 쉽도록 도식화) - 추진과제와 세부사업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도와 개략 설명 제시 나-① 세부사업명1(3페이지 이내 작성) • 목적 및 필요성: • 사업개요: 기간 및 사업비 • 대상위치: • 사업내용 • 사업비 • 하위사업 • 추진프로세스 • 추진체계 • 연계방안 ☞ 연계방안에는 타 세부사업과의 연계성과 농촌특화지구로 지정할 경우 농촌특화지구와의 연계내용 포함 • 규제개선 및 제도개선 • 사업효과 나-② 세부추진과제명2(3페이지 이내 작성) ....(이하 생략) 다. 추진전략명2 1) 기본방향(추진전략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제시) 2) 추진전략 구상도 및 관계도 - 추진과제별 위치와 모식도(추진과제 또는 세부추진과제의 개략적 대상범위(위치), 이행 목표(개수) 등을 파악하기 쉽도록 도식화) - 추진과제와 세부과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관계도와 개략 설명 제시 다-① 세부사업명1(3페이지 이내 작성) ..... 다-② 세부사업명2... .....

목차	항목별 세부 내용
6.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부문 계획과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농촌특화지구를 활용하여 농촌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계획 가. 기본방향 1) 개요 및 필요성 ☞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농촌특화지구의 육성방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서 농촌특화지구의 목적, 필요성 등 제시 2) 농촌특화지구의 검토 ☞ 기본계획에서 도출한 농촌특화지구에 대해 해당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의 특화지구의 종류별 유형, 발전전략에 대해 검토하여 요약 제시 ☞ 농촌특화지구유형별 발전전략과 관리 방안에 대해 구체화 나.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계획 ☞ 금번 시행계획을 통해 지정하고자 하는 농촌특화지구에 대해서만 농촌특화지구별로 작성하며, 의제처리 등의 행정절차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추가할 필요 1) 농촌특화지구 지정계획 ① 목적 및 필요성 ② 위치 및 면적 ③ 현황 및 여건(지구내 토지이용 및 주요 시설 현황 중심 작성) ④ 지정조서 및 지정도서(별표 4) * 도시군 계획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식 활용 가능 ⑤ 관계 행정기관 협의 결과 2) 농촌특화지구 관리계획 ① 육성방향, 사업계획, 주민 등 의견 수렴 결과, 주민협정 체결 결과, 규제 및 특례 활용 방안, 기대효과 포함 ② 사업계획은 종합구상도, 사업기간, 총사업비 및 세부사업별 사업명, 사업비, 제6장 '사업계획'의 사업과의 연계를 나타내는 연번을 제시 ☞ 농촌특화지구 후보군이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 원활한 농지의 전용허가·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할 필요 ▸ 농업진흥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지역을 우선 검토 ▸ 불가피한 사유로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하는 경우라도 최소로 편입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하고, 편입되는 농업진흥지역의 위치*도 고려할 필요 * 농업진흥지역의 한가운데 등은 향후 농지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 시 지양
7. 계획의 실행 및 성과관리	가.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계획 나. 재정 및 투자계획* * 투자계획은 시군의 세출예산을 고려하여야 하며, 추진과제별로 포괄하여 제시 가능 다. 성과관리 계획(성과관리 지표 설정 및 성과목표 선정, 추진 상황 점검·모니터링·평가를 위한 관리계획 등)

※ 목차와 항목별 세부 내용은 시군의 여건에 따라 조정 가능

〔별표 2〕 사업계획표, 일정표, 종합사업계획도 예시

<총괄 사업계획표 예시>

(단위: 억원)

추진전략	추진과제	세부사업	개소수(건)	대상지역	사업내용	시행주체(주관부서)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기타		사업기간	농촌특화지구 관련사업
								재정보조	부처연계	시도	시군구	공기업	민간		
합 계					-	-									
추진전략1	(소 계)														
	추진과제1	(소 계)													
		세부사업 1		○읍 ○리	HW	농식품부								26~30	A농촌마을보호지구
		세부사업 2			SW										
	추진과제2	(소 계)			SW										
		세부사업 1			HW	국토부									
		세부사업 2			SW										B농촌산업지구
추진전략2	추진과제1	(소 계)													
		세부사업 1			SW	○○군									
		세부사업 2			HW	○○도									
		세부사업 3			SW	○○공사									
⋮	⋮	⋮													

※ 하나의 세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는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사업추진 일정표 예시>

추진과제	세부사업	00년				00년				0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추진과제1	세부사업1		▲조직구성		▲사업운영								
	세부사업2			▲착공		▲준공							
추진과제2	세부사업1						▲착공				▲준공		
	세부사업2						▲착공		▲준공				
	세부사업3						▲착공						▲준공
추진과제3	세부사업1	▲준비			▲운영								

(3) 추진 과제, 세부사업의 개요, 위치, 사업비를 포함한 개략적 사업 내용을 도면에 표시하는 종합 사업계획도를 작성하여 시행계획에 제시한다.

< '종합 사업계획도' 예시 >

농촌다움으로 상생을 이끄는 남부

목표1. 공동체와 함께하는 행복한 농촌생활

추진과제	세부사업	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A 추진과제명	A-1. 세부사업명	해미면	'23~'27	180	농식품부
	A-2. 세부사업명	인지면 외 3	'23~'27	160	농식품부
	A-3. 세부사업명	전체	'23~'27	53	충남도
	A-4. 세부사업명	전체	'23~'27	17	서산시
	A-5. 세부사업명	인지면	'22~'24	110	국토부
	A-6. 세부사업명	부석면	'21~'27	81	해수부
	A-7. 세부사업명	부석면	'22~'24	73	해수부
	A-8. 세부사업명	전체	'23~'27	2	서산시
	A-9. 세부사업명	전체	'23~'27	33	복지부
	A-10. 세부사업명	전체	'23~'27	30	지자체
	A-11. 세부사업명	전체	'23~'27	25	국토부
B 추진과제명	B-1. 세부사업명	전체	'23~'27	18	농식품부
	B-2. 세부사업명	전체	'23~'27	32	서산시
	B-3. 세부사업명	전체	'23~'27	16	서산시
	B-4. 세부사업명	전체	'23~'27	35	서산시

목표2. 농촌다움 기반 지역순환경제 구축

추진과제	세부사업	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C 추진과제명	C-1. 세부사업명	석림동	'24~'25	80	농식품부
	C-2. 세부사업명	부석면	'24~'25	3	농식품부
	C-3. 세부사업명	부석면	'20~'25	30	농식품부
	C-4. 세부사업명	전체	'23~'27	5	서산시
	C-5. 세부사업명	부석면	'24~'25	15	농식품부
	C-6. 세부사업명	운산면	'25	25	농식품부
D 추진과제명	D-1. 세부사업명	운산면	'23~'27	1	농식품부
	D-2. 세부사업명	팔봉면	'22~'26	2,448	해수부
	D-3. 세부사업명	부석면	'22~'24	170	농식품부
	D-4. 세부사업명	부석면	'20~'27	282	농식품부

목표3. 농촌다운 주거 · 생태환경 조성

추진과제	세부사업	대상지	사업기간	사업비	비고
E 추진과제명	E-1. 세부사업명	운산면	'23~'27	50	농식품부
	E-2. 세부사업명	인지면	'24~'25	24	농식품부
	E-3. 세부사업명	부석면	'23~'24	150	국토부
	E-4. 세부사업명	팔봉면	'22~'26	290	행안부
	E-5. 세부사업명	인지면	'23~'27	240	행안부
	E-6. 세부사업명	전체	'23~'27	25	서산시
	E-7. 세부사업명	전체	'23~'27	23	환경부
F 추진과제명	F-1. 세부사업명	부석면	'23~'27	50	환경부
	F-2. 세부사업명	부석면	'22~'25	150	해수부
	F-3. 세부사업명	부석면	'22~'26	2,972	해수부
	F-4. 세부사업명	전체	'23~'27	205	산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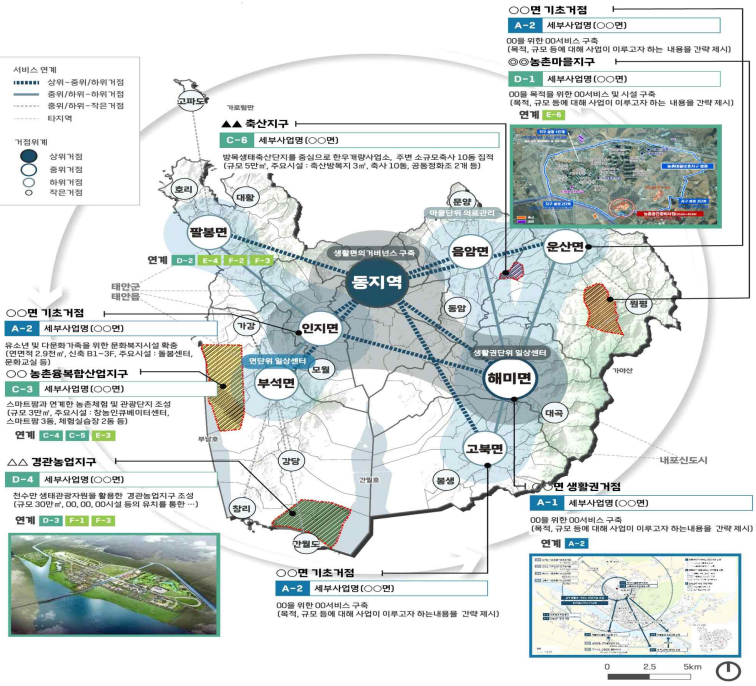

※ 예시는 '서산시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23)' 재편집

[별표 3] 농촌특화지구 지정 시 검토하여야 하는 법률(예시)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② 도로법

③ 축산법

④ 농지법

⑤ 농어촌정비법

⑥ 자연환경보전법

⑦ 산지관리법

⑧ 산림보호법

⑨ 초지법

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⑪ 수도법

⑫ 하천법

⑬ 소하천정비법

⑭ 지하수법

⑮ 자연공원법

⑯ 문화유산법

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⑲ 경관법

⑳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㉑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㉒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㉓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별표 4〕 농촌특화지구 지정 조서 및 지정 도면

1. 농촌특화지구 지정(변경) 조서

가. 농촌특화지구 지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지구 유형	면적 (㎡)	최초지정근거 (최초지정일)	비 고
신설							
기정							
변경							
폐지							

나. 농촌특화지구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지 구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구체적 작성)

※ 작성방법

- 도면표시번호 : 특화지구별 번호를 사용할 경우 도면상 그 표시번호
- 지구명 : 동·리 또는 도로 명칭 등을 사용하여 위치감이 있도록 함
- 지구유형 : 농촌마을보호지구, 농촌산업지구, 축산지구,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재생에너지지구, 경관농업지구, 농업유산지구,
- 위치 : 행정구역상 동·리명과 대표 번지 기재
- 비고 : 특기사항 기재
- 단위 : ㎢, 천㎡, ㎞, 천m인 경우에는 소수점 2자리까지 표시, ㎡, m인 경우에는 정수로 표시

2. 농촌특화지구 지정 도서

도면1. 지형도면고시도(예시1)	도면1. 지형도면고시도(예시2)
도면2.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예시1)	도면2.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예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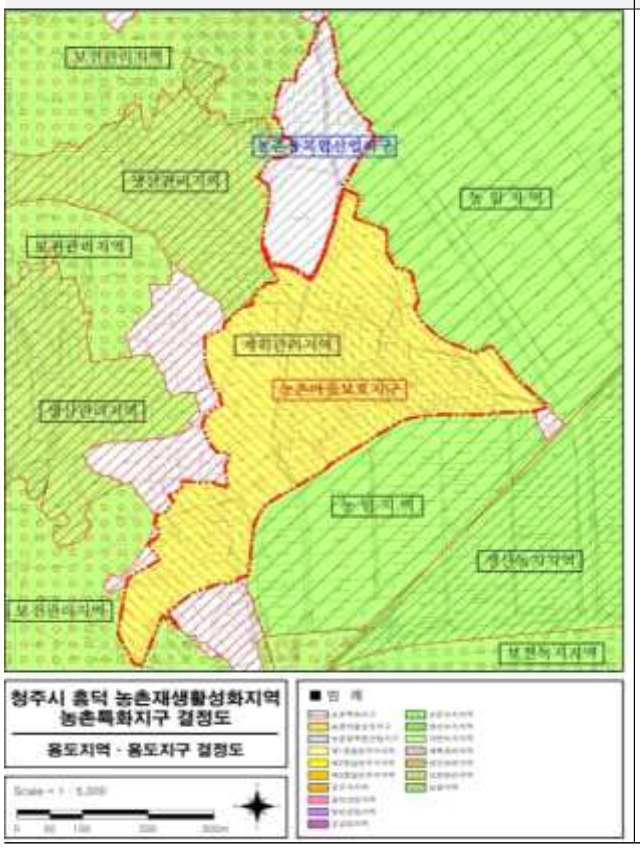	

도면3. 지적도(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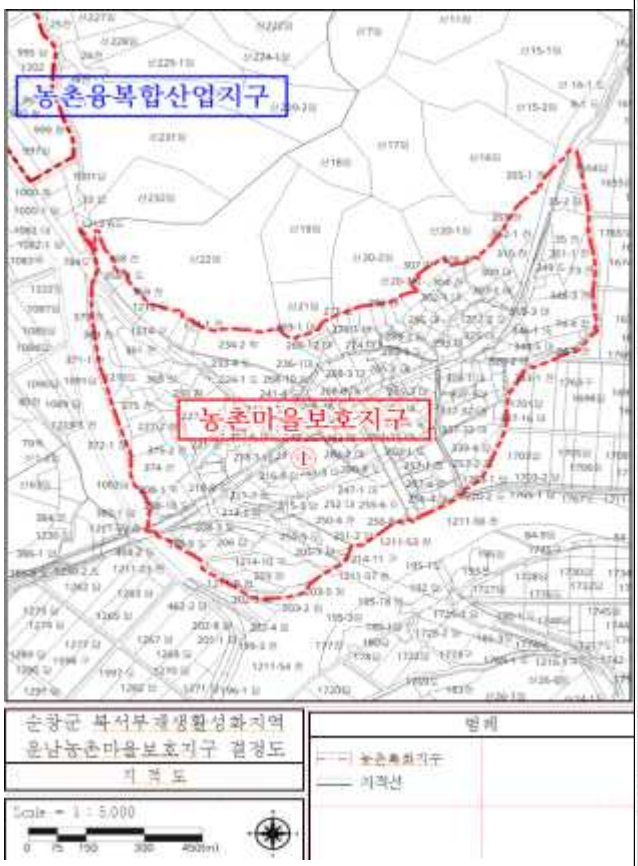

도면3. 지적도(예시2)

도면4. 마을보호지구 완충설정도(예시)

도면5. 지구계결정 사유도(예시)

※ 마을보호지구 완충설정도는 지적도 위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위성사진으로 설명하기가 더 명확한 경우는 추가 가능

[붙임 1] 세부사업 계획(서식)

세부사업명	농식품부 사업	타부처 소관사업	지자체사업	공기업	민간투자

구 분	주요 내용
목적	• ㅇㅇㅇㅇ
사업기간	• 2000~2000(0년간)
사업비	• 총사업비 : 000백만원(2000-2000) •
대상지 위치	• 00면 00리 00-0
사업내용	• OOO 거점센터 조성(A=0,000㎡) - H/W : 00시설, 00시설, 00시설 등 - S/W : 00프로그램 개발, 00마케팅, 00교육, 00인력 육성 등 • 00센터 내 00을 위한 00운영 지원
담당과	• OOOOO OO과
세부 사업비	<사업총괄표>

총 사업비 (단위 : 백만원)

합계	국비	지방비		기타 (추가 지방비 등)
		시도비	시군비	
				-

연차별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분*	유형	계	2000	2000	2000	2000	2000
합계							

* 조사설계비, 토지매입비, 공사비, 부대비 및 운영관리비 등으로 구분 작성 가능

<세부 내용>

구분		사업명	예산 (억)	비고
HW	A-1	걷고싶은 00 조성		
SW	C-1	OO 시범사업		
HW	C-1	OO 시범사업		

추진 프로세스				
	▸	▸	▸	▸
(3개월)	(9개월)	(12개월)		

구 분	주요 내용
부지확보 현황	• 옹지매입 지번, 면적, 용도지역, 소유자, 부지확보 현황 등
농촌특화 지구 연계성	• OO농촌마을보호지구, OO경관농업지구
연계방안	• 거점센터 OOO 기능과 재생활성화 대상사업 OOO 기능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규제(제도) 개선	• OO지역의 OO㎡에 대해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해제하여 축산지구 조성 • 기타 법령이 허용한 규제 특례, 지방세 감면 또는 시장군수가 고려할 수 있는 규제개선 활용 방안 등
사업효과	• OOOO지역 지역균형발전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OOO기능과 OOO 프로그램 고도화를 통한 OO 목적 달성 기대
첨부	• 사업부지 확보를 위한 소유자 사전협의 근거서류 등 • 기타 세부사업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 예시 사항으로 시군의 특성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 가능

[붙임 2] □□ 농촌○○특화지구 관리계획(예시, 10쪽 내외 이내)

1. 육성 방향

○ 지역의 여건 및 특성

※ 유사한 기능의 이전·집적화, 농촌다움의 보전 및 농촌경제활성화, 정주개선 등을 위해 해당 농촌특화지구의 필요성에 대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간략히 설명

○ 육성방향

-

※ 00, 00, 00을 통해 00의 기능을 집중화하고, 00등을 유치하여 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군이 육성하려는 방향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달라지는 농촌의 변화상 등도 포함하여 작성

2. 개요

○ 위치:

○ 기간: 00~00년(00년)

○ 투자계획: 억원(국비00, 지방비00, 민간투자 00)

○ 종합구상도

※ 농촌특화지구의 조성완료 시 달성하게 될 미래구상에 대해 작성

3. 사업계획

사업명		세부사업번호[1]	사업비 (백만원)	재원[2]	사업기간	비고
①	OO사업				00~00(0년)	• 00 조성(A=000㎡) • 0000 운영(0년간)
②	OO사업					
③	OO사업					
④	OO사업					
⑤	OO 시범사업					
	. . .					

※ 작성방법

1) 세부사업번호: 사업계획의 일련번호를 표시

2) 재원: 국비, 지방비, 민간 등...

3) 사업기간: 향후 5년간 또는 기본계획의 목표연도인 10년내에 추진할 기간을 작성

① OO사업

※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② OO사업

※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③ OO사업

※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4. 기타

(1) 주민의견 청취 결과

○

○

(2) 관계부처 협의 결과(있는 경우)

○

○

(3) 주민협정 체결 결과(해당시)

○

○

5. 규제개선 및 규제특례 활용방안

○

○

6. 기대 효과

※ 단순히, 부가가치향상, 일자리 창출기여, 균형발전 도모 등 원론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농촌특화지구 조성으로 달라지는 구체적인 성과 위주로 작성(예: OO이 OO에서 OO% 상승 등)

○

○

[참고 1]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주체별 역할(예시)

추진 주체		주체별 역할
행정	지원조직 (행정전담조직)	·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 시행계획의 총괄·조정·관리 · 세부 사업계획 총괄·조정·관리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예산 등의 관리 · 농촌특화지구 지정, 주민협의체, 주민협정 총괄 · 재원조달 및 관리 · 기초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
	행정협의회 (B부서, C부서)	·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 세부사업 추진 · 시행계획과 세부사업 간 연계성 등 점검 · 세부 사업계획 수립 총괄
사업 시행 지원	기초농촌공간정책 심의회	·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주요 현안 심의
	지역전문가 활동가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실질적 지원 및 자문 ※ 지역 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되 어려운 경우 시도 범위로 확대하여 구성
	기초정책지원 기관	· 현황 및 주요 지표 조사·관리 지원 · 농촌공간 정책 관련 조사·연구 · 시행계획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지원 · 농촌특화지구 지정, 주민협의체, 주민협정 추진 지원 · 주민제안사업 관련 타당성 검토 등 사업화 지원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 점검·평가 지원
주민 의견 수렴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주민협의체	· 주민, 행정협의체 · 읍면별, 사업별, 특화지구 등 주민조직 의견수렴 · 읍면 간 발생하는 갈등 중재 ·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내용 논의 및 결정
	주민협의기구	·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사업추진 · 발생하는 갈등 중재 · 주민 역량강화사업 참여·운영
	주민협의회	· 농촌특화지구 주민동의서 수집 · 협정(안) 마련, 주민제안 · 시행계획 의견 제시 등
사업 추진 지원	교육기관(대학 등)	· 주민교육, 역량강화, 주민대상 사업 홍보 지원 등
	한국농어촌공사, 민간 기업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및 지원 · 사업시행 등
	지역내 주민공동체	· 관련사업 추진 참여, 의견 제시 · 역량강화, 교육 참여
	지역농협 등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 · (지역농협) 농업기술보급 및 복지서비스 지원 · (기타 단체) 농촌공간 문제점, 이슈 사항 제시

[참고 2]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 수립절차

추진체계 구축	-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 지원조직, 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주민협의체 등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초 조사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현황 및 여건 조사·분석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관련 계획 및 사업 여건 검토 - 농촌특화지구 입지 여건 분석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종합 분석 및 세부과제 도출
⇩	
시행계획(안) 수립	- 주민공동체·거버넌스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기획 및 시행 - 계획의 목표, 추진 전략 설정 -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 발굴 및 타 부처 등 사업 연계 - 농촌특화지구의 지정·운용·관리 방향 설정 - 농촌재생활성화지역 기본구상 및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수립
⇩	
기초 심의	- 기초농촌공간계획정책심의회 심의
⇩	
관계기관 협의(필요시)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후부 장관 협의
⇩	
광역 심의·승인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시장·도지사 승인
⇩	**농촌협약 체결 시·군으로 선정 시**
시행계획 변경 (농촌협약 체결 시·군)	- 농촌협약의 내용을 반영하여 시행계획 내용 변경
⇩	
시행계획 변경 승인	-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시장·도지사 승인
⇩	
공고	- 승인된 시행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가 공고

[참고 3]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0조, 제43조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법 제30조(토지 등의 수용) ① 사업시행자가 제2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물건 및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 필요성이 인정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에 토지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나 물건을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토지나 물건을 제거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본 자가 있으면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④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 그 현물보상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수용·사용·제거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기반시설설치비용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에 따라 건축하는 농촌생활서비스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시장·군수 등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참고 4〕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31조에 따른 '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법 제31조(다른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 ① 사업시행자가 제28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또는 해제 등(이하 "인·허가 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사업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고시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수익의 허가
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사업계획의 승인
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결정 및 변경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8.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9.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10.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1. 「문화재보호법」 제3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에 따른 허가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에 따른 국유지 사용허가
12.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3.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에서의 토지형질변경 등의 허가
16.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8.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9.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시행의 승인
2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21.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분묘의 개장 허가
23.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2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5.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협의
2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의 허가
2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8.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 허가·신고 또는 협의
2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의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31. 「하수도법」 제11조·제16조·제24조·제27조 및 제3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공사시행 허가, 점용허가,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32.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3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된 것에 한정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사업계획을 승인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된 것으로 본다.

〔참고 5〕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23의2)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8조제2항 관련, 신설 2025. 7. 1., 시행 '25. 10. 2.)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창고
      2)「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설치·운영하는 농업·축산업·수산업·임업용 창고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식물과 관련된 같은 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
   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너목(수리점 등 물품의 수리를 위한 시설만 해당한다)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의 시설
   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나)「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전업농업인
         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후계수산업경영인인 어업인 및 전업수산인인 어업인
         마) 지방자치단체

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같은 호 가목의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2)「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것
카.「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같은 호 차목의 시설(같은 호 가목・나목・라목・바목 및 사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파.「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가목・나목의 시설 및 같은 호 아목의 시설(동물과 관련된 같은 호 가목・나목의 시설과 비슷한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하.「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1일 하수처리용량이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거.「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너.「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참고 6] 「농어업인삶의질법」에 의한 시행계획 세부사업 목록('25년 기준, 201개)

※ 과제명 중 진한 글씨는 국비지원 사업명을 의미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사업명	관련부처	담당부서명
1-1-1-1	농촌특화지구 제도개선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1-1-1-2	자율규제혁신지구 도입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1-1-1-3	**농촌 융복합산업 활성화**	농촌경제활성화지원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1-1-2-1	**농산업 혁신벨트 구축**	농촌경제활성화지원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1-1-2-3	바다 생활권 중심 어촌·연안 활력 제고	비예산과제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1-1-2-4	**어촌 신활력 증진**	어촌신활력증진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1-1-2-5(1)	어촌 발전특구 도입	어촌신활력증진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1-1-2-5(2)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양식어업육성	해수부	양식산업과
1-1-2-5(3)	**수산클러스터**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	해수부	수출가공진흥과
1-1-3-1	**농식품 창업·혁신 기업 성장 지원**	농식품벤처창업활성화지원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1-1-3-2	**지역 경제 활성화 펀드 조성**	농식품모태펀드 출자	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1-1-3-3(1)	**해양수산 창업·혁신 기업 성장 지원**	수산산업창업투자지원	해수부	수산정책과
1-1-3-3(2)	**수산 모태펀드 결성**	수산모태펀드출자	해수부	수산정책과
1-1-3-4	**신규인력 수산업 진출 지원**	양식장임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1-1-3-5	**어촌공동체·마을기업창업지원**	어업인삶의질향상	해수부	소득복지과
1-2-1-1	**세계인이 찾고싶은 K-농산어촌 관광벨트 구축**	농촌경제활성화지원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1-2-1-2	K-Heritage 프로젝트 추진	농촌경제활성화지원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1-2-1-3	K-Heritage 프로젝트 추진	비예산과제	해수부	어촌어항과
1-2-1-4	세계중요농업유산 신규 등재	농촌경제활성화지원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1-2-1-5	**세계중요어업유산 신규 등재**	비예산과제	해수부	어촌어항과
1-2-1-6	**국가중요농업유산 관광 자원화**	농촌경제활성화지원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1-2-1-7	**국가중요어업유산 관광 자원화**	어촌소멸대응지원	해수부	어촌어항과
1-2-1-8	지역 유산제도 도입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1-2-1-9	지역 유산제도 도입	비예산과제	해수부	어촌어항과
1-2-1-10	**경관보전직불제 단가 인상**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사업명	관련부처	담당부서명
1-2-1-11	**K-관광섬 구축**	지역관광 다양성	문체부	관광개발과
1-2-1-12	**농촌 관광 활성화**	농촌경제활성화지원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1-2-1-13	**산촌 관광 활성화**	산림교육치유활성화 등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등
1-2-1-14(1)	**해양관광육성**	해양관광육성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1-2-1-14(2)	**마리나항만**	마리나 항만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1-2-1-14(3)	**크루즈산업 활성화**	크루즈산업 활성화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1-2-1-15	**어촌체험휴양마을운영**	어촌소멸대응지원	해수부	어촌어항과
1-2-2-1	**치유농업 확산기반 구축**	치유농업센터 구축 등	농진청	농진청 농촌자원과
1-2-2-2	**치유농업 환경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농진청	농진청 농촌자원과
1-2-2-3	**산림치유 확산**	산림교육치유활성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1-2-2-4	**해양치유 확산**	해양관광육성 등 기술 개발(R&D)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
1-2-2-5	**농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농촌경제활성화지원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1-2-2-6	**어촌형 워케이션 활성화**	어촌소멸대응지원	해수부	어촌어항과
1-3-1-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중기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1-3-1-2	**푸드테크 분야 전문인력 육성**	식품산업인프라 강화	농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
1-3-1-3	**창업자 대상 콘테스트 개최 (농촌혁신 아이디어 콘테스트)**	농촌경제활성화지원	농식품부	농촌경제과
1-3-2-1	**청년 농업인 육성**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1-3-2-2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조성**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농진청	농진청 기술보급과
1-3-2-3	**미래 산림인 육성**	산림정책개발	산림청	산림정책과
1-3-2-4	**청년 어업인 창업 정책자금 지원**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해수부	소득복지과
1-3-2-5(1)	청년 어업인 어업활동 기반 지원(마을어장 공공이용)	비예산과제	해수부	어업정책과
1-3-2-5(2)	**청년 어업인 어업활동 기반 지원 (어선청년임대사업)**	어선청년임대	해수부	어업정책과
1-3-2-5(3)	**청년 어업인 어업활동 기반 지원 (청년창업·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양식장임대	해수부	양식산업과
1-3-2-5(4)	청년 어업인 어업활동 기반 지원 (충남 당진 간척지스마트 양식단지 조성)	내수면자원조성	해수부	양식산업과
1-3-2-6	**청년 어업인 생활 및 소득 기반 지원**	청년어촌정착지원	해수부	어촌어항과
1-3-2-7	**수산 전문인력 양성**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해수부	소득복지과
1-3-2-8	한농대 졸업생 영농·영어 정착 지원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사업명	관련부처	담당부서명
1-3-2-9	**농업인 전문역량 향상 지원**	농업인대학, 신규농업인영농기술향상	농진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량개발과
2-1-1-1	**농촌공간 재구조화**	농촌공간계획및재생지원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2-1-2-1(1)	농촌 빈집 정비 특례법 조성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2-1-2-1(2)	어촌 빈집 정비 특례법 조성	비예산과제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2-1-2-2	빈집 정비 추진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2-1-2-3	**노후주택 정비 추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2-1-2-4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지원**	슬레이트관리	기후부	환경피해구제과
2-1-2-5(1)	**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	주거급여지원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2-1-2-5(2)	**취약계층 주거개선**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2-1-2-6	**하수도 보급률 확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기후부	생활하수과
2-1-3-1	**지역활력타운 조성**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국토부	지역정책과
2-1-3-2	**청년 보금자리 조성**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2-1-3-3(1)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물량 확대(매입임대)**	고령자복지주택(매입형)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
2-1-3-3(2)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물량 확대(리모델링)**	고령자복지주택(리모델링)	국토부	공공주택정책과
2-1-3-3(3)	고령자복지주택 공급물량 확대(건설형)	비예산과제	국토부	청년주거정책과
2-1-3-4	**스마트빌리지 구축**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과기부	디지털사회기획과
2-1-3-5	**청년 바다마을 조성**	청년어촌정책지원	해수부	어촌어항과
2-1-4-1	**배관망 방식 LPG 공급 구축 확대**	읍·면단위LPG배관망구축사업 등	산업부	가스산업과
2-1-4-2	**섬마을 LPG 구축**	섬 발전 협력사업 추진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
2-1-4-3	**도시가스 보급률 확대**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융자)	산업부	가스산업과
2-1-4-4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해수부	연안해운과
2-2-1-1	농촌 체류형 쉼터 활성화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농지과
2-2-1-2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시범조성**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2-2-1-3(1)	**빈집 생활인구 유입 공간으로 탈바꿈**	농촌빈집재생지원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2-2-1-3(2)	빈집 생활인구 유입 공간으로 탈바꿈	비예산과제	해수부	어촌어항재생과
2-2-1-4	**빈집은행 추진**	농촌생활인구유입지원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2-2-2-1	**귀농·귀촌 활성화**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농식품부	청년농육성팀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사업명	관련부처	담당부서명
2-2-2-2(1)	**귀어·귀촌 활성화**	어촌소멸대응지원, 등	해수부	어촌어항과
2-2-2-2(2)	귀어통합시스템구축	어촌소멸대응지원	해수부	어촌어항과
2-2-3-1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개선	비예산과제	행안부	균형발전진흥과
2-2-3-2	행복농업·희망농촌서포터즈운영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2-3-1-1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인프라 확충**	재활용 가능 자원 수거·선별 인프라 구축	기후부	생활폐기물과
2-3-1-2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농진청	농진청 재배대응과
2-3-1-3	**생활폐기물 수거 확대**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기후부	폐자원에너지과
2-3-1-4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신속 수거**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후부	수질수생태과
2-3-1-5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에너지화시설 확충**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농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2-3-1-6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 및 바이오에너지화 확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기후부	수질수생태과
2-3-1-7	**섬·어촌지역 상하수도 개선**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등	기후부	생활하수과
2-3-1-8	**해양쓰레기 줄이기 실천운동**	정책소통및감사감찰활동	해경청	해양오염예방과
2-3-1-9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해양 및 수자원 관리(자율, 제주)	해수부	해양보전과
2-3-1-10	**유실·침적 폐어구 처리**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 지원	해수부	어구순환정책과
2-3-1-11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확대	비예산과제	해경청	기동방제과
2-3-2-1	**갯벌 생태계 복원**	갯벌생태계복원사업	해수부	해양생태과
2-3-2-2	**생태관광지역 확대**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지원)	기후부	자연공원과
2-3-3-1	농어촌지역 범죄예방활동 강화	비예산과제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2-3-3-2	**외국어선 불법조업 감시 강화**	경비대테러역량강화	해경청	경비작전과
2-3-3-3	**산림보호지원단 운영**	산림재해일자리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2-3-3-4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실시**	여성폭력방지정책 추진기반 구축	여가부	폭력예방교육과
2-3-3-5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	스마트 해양안전교통망 구축.운영	해수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2-3-3-6	**해상교통관제구역 확대**	VTS구축운영	해경청	해상교통관제과
2-3-3-7	**민관 협력 수난구호 확대**	수색구조역량강화	해경청	수색구조과
2-3-3-8	농업분야 기후위기 대응 총괄 법안 마련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2-3-3-9	**이상기상 대응 및 기후변화 적용 정보 제공**	기후변화 실태조사	농식품부	농촌탄소중립정책과
2-3-3-10	**태풍·해일 대비 전국 어항시설 보강**	국가어항	해수부	어촌어항과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사업명	관련부처	담당부서명
2-3-3-11	**산불 피해 예방**	산불방지대책 등	산림청	산불방지과
2-3-3-12	**산사태 예방**	산사태재난 경계피난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2-3-3-13	**수리시설 개보수**	수리시설개보수	농식품부	농업시설안전과
2-3-3-14	인명피해 우려지역 대피 지원체계 강화	비예산과제	행안부	재난대응총괄과
3-1-1-1	**농촌 왕진버스 지원**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1-1-2	**어업안전보건센터 운영**	어업인삶의질향상	해수부	소득복지과
3-1-1-3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	비예산과제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3-1-1-4	섬 비대면 진료서비스 제공	어업인삶의질향상	해수부	소득복지과
3-1-2-1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여성농업인특수건강검진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3-1-2-2	**여성어업인 특수건강검진 확대**	어업인삶의질향상	해수부	소득복지과
3-1-2-3	**응급처치 전문교육 실시**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1-2-4	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비예산과제	복지부	노인정책과
3-1-3-1	**지역거점 공공병원 시설 및 장비 현대화**	지역거점병원혁신지원(지역거점병원공공성강화	복지부	공공의료과
3-1-3-2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복지부	건강정책과
3-1-3-3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비예산과제	복지부	공공의료과
3-1-3-4	**지역거점공공병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복지부	공공의료과
3-1-3-5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복지부	응급의료과
3-1-3-6	**분만 취약지 해소**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복지부	공공의료과
3-1-3-7	**소아청소년과 취약지 해소**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복지부	공공의료과
3-1-3-8	섬 지역 응급대응체계 강화	비예산과제	해경청	수색구조과
3-2-1-1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 수립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2-1-2	**서비스 제공 주체육성 기관 지정·운영**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2-1-3	**농촌 돌봄농장 육성**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2-1-4	**농촌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육성**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2-1-5	**농번기 돌봄지원 강화**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3-2-1-6	**찾아가는 돌봄교실 운영**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3-2-1-7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가구 확대	비예산과제	여가부	가족문화과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사업명	관련부처	담당부서명
3-2-1-8	**농촌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3-2-1-9	공동육아나눔터 확대	비예산과제	여가부	가족정책과
3-2-2-1	**노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지원체계 마련**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계획수립서비스체계구축	복지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
3-2-2-2	**농촌 돌봄마을 조성**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2-2-3	한울타리유치원 사업 운영	한울타리유치원 사업	교육부	영유아정책총괄과
3-2-2-4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속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
3-2-2-5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교육부	영유아교원지원과
3-3-1-1(1)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3-1-1(2)	**어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해수부	소득복지과
3-3-1-2(1)	**농업인 국민연금 지원**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3-1-2(2)	**어업인 국민연금 지원**	어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	해수부	소득복지과
3-3-1-3	**영농도우미 지원**	농촌고용인력지원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3-1-4	**어업 활동지원**	어업인삶의질 향상	해수부	소득복지과
3-3-1-5	**여성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	고용부	고용노동부
3-3-2-1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실천 현장지원**	농작업 안전사고 예방실천 현장지원	농진청	농업인안전팀
3-3-2-2	**농업인 업무상 재해 보장 및 예방관리 기반 조성**	농업인 업무상 재해예방 기술개발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촌환경안전과
3-3-2-3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3-3-2-4	**어업인 안전 교육 확대**	어업인 안전보험	해수부	소득복지과 수산원 연구협력과
3-3-2-5	**어업인 안전보험 가입 확대**	어업인 안전보험	해수부	소득복지과
3-3-2-6	**어선사고 예방 구명조끼 보급 확대**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	해수부	어선안전정책과
3-3-2-7	**농기계 재해보험 가입 확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3-3-2-8	**어선원·어선 재해보험 확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해수부	소득복지과
3-3-2-9(1)	재해대책비 지원확대	비예산과제	행안부	복구지원과
3-3-2-9(2)	**재해대책비 지원확대**	재해대책비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3-3-2-9(3)	**재해대책비 지급 확대**	친환경에너지보급및용수관리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3-3-2-10	**농업정책보험 확대**	농업재해보험	농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3-3-2-11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해수부	소득복지과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사업명	관련부처	담당부서명
3-3-3-1	**농지이양 은퇴직불제 정착**	농지이양은퇴직불	농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3-3-3-2	**고령어업인 경영이양직불제 지원**	수산공익직불제	해수부	수산직불제팀
3-3-3-3	**농지연금 가입 확대**	농지연금(융자)	농식품부	농지과
3-3-3-4	어촌마을 자치연금 확대	어촌소멸대응지원	해수부	어촌어항과
3-3-3-5	기초연금 인상	비예산과제	복지부	기초연금과
3-3-3-6	노인일자리 제공	비예산과제	복지부	노인지원과
3-4-1-1	농어촌 늘봄학교 활성화	비예산과제	교육부	늘봄학교정책과
3-4-1-2	**늘봄학교 농업·농촌체험 프로그램 개발**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4-1-3	농어촌학교 특화 교육과정 등 운영 지원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4-1-4	농어촌상생기금 활용, 우수모델 확산	비예산과제	농식품부	농촌정책과
3-4-1-5	대학·기업연계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	진로교육	교육부	기초학력진로교육과
3-4-1-6	농어촌 이주배경학생 멘토링 사업	비예산과제	교육부	이주배경학생지원팀
3-4-1-7	농어촌학교 통학 지원	비예산과제	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3-4-1-8	유아 학비 부담 완화	비예산과제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3-4-2-1	**성인 문해교육 활성화**	성인 문해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3-4-2-2	**취약계층 대상 평생교육바우처 지원규모 확대**	평생교육바우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3-4-2-3	어촌 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확대	어업인삶의질향상	해수부	소득복지과
3-4-3-1	교육발전특구 지정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3-4-3-2	지역별 현안에 맞는 학교복합시설 사업 추진	학교복합시설	교육부	교육시설담당관
3-4-3-3	학교 시설 안전 강화	학교 시설 안전 강화	교육부	교육안전정책과
3-5-1-1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 확대**	국립도서관 분관운영	문체부	어린이청소년도서관기획협력과
3-5-1-2	**찾아가는 박물관 서비스 확대**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문체부	어린이박물관과
3-5-1-3	찾아가는 문화서비스 활성화	비예산과제	문체부	문화정책과
3-5-1-4	**구석구석 문화배달 확대**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3-5-2-1	문화취약지역 선정지표 개선	비예산과제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3-5-2-2	문화누리카드 농어촌지역 가맹점 확대	비예산과제	문체부	문화정책과
3-5-2-3	**취약지역 어르신 문화누림**	문화균형발전증진추진지역어르신문화누림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과제번호	과제명	세부사업명	관련부처	담당부서명
3-5-2-4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	비예산과제	문체부	체육진흥과
3-5-3-1	**유휴시설 활용 문화기반 조성**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자율, 제주, 세종)	문체부	문화시설기획과
3-5-3-2	**농촌 재능나눔 및 돌봄공동체와 예술공연 활동 연계**	농촌취약계층복지지원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3-5-3-3	**지역 특색 콘텐츠 발굴·보전**	문화균형발전종진지역원천문화콘텐츠발굴활용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3-6-1-1	식품사막 최소화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제주, 세종)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3-6-1-2	어복버스 무인 점빵	어업인삶의질향상	해수부	소득복지과
3-6-1-3	어복버스 이동장터	어업인삶의질향상	해수부	소득복지과
3-6-1-4	**생활권 거점 중심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일반농산어촌개발(자율, 제주, 세종)	농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3-6-2-1	**농촌형 교통서비스 제공**	농촌형교통모델(자율)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3-6-2-2	**공공형 버스·택시지원**	도시형교통모델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3-6-2-3	**벽지노선 지원**	벽지노선지원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3-6-2-4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및 안전용품 보급**	교통안전공단 출연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
3-6-2-5	**도서지역 해상교통환경 개선**	국가보조항로결손보상금, 내항여객선운임보조	해수부	연안해운과
3-6-2-6	**노후 연안여객선 현대화**	연안선박현대화지원, 국고여객선건조	해수부	연안해운과

[참고 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상 연계사업 목록('23년 기준)

	사업목록	부처명
1	디지털배움터	과기부
2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3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법무부
4	해양관광육성	해수부
5	어촌체험휴양마을 조성	
6	귀어귀촌 활성화	
7	청년어업인정착지원	
8	스마트양식 클러스터조성	
9	어촌 신활력 증진	
10	소외도서 항로 지원	
11	노후·유휴 항만 재개발	
12	연안정비	
13	안전항만 구축	
14	주력산업육성	중기부
15	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	
16	로컬크리에이터활성화	
17	중소기업혁신바우처지원	
18	중소기업 위기대응체계	
19	다문화 가정 지원 돌봄	여가부
20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2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	산업부
22	산업단지 디지털화	
23	청년문화센터 구축	
24	지역투자촉진	
25	아름다운거리플러스	
26	노후공장청년 친화 리뉴얼	
27	고령층 생활체육	문체부
28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	
29	열린관광 환경 조성	
30	관광거점도시	
31	광역관광개발	
32	체류형 여행 모델 확산	
33	고령층 여가지원 실버마이크	
34	구석구석 문화배달	
35	디지털 관광주민증	
36	문화예술 창제작 지원	
37	로컬100	
38	청년여성농업농촌탐색교육	농식품부
39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40	농촌관계인구형성 지원	

	사업목록	부처명
41	임대형 스마트팜	
42	그린바이오 벤처캠퍼스	농식품부
43	귀농귀촌통합플랫폼 운영	
44	농촌형 교통모델	
45	농촌보육여건개선사업	
46	농촌 관광콘텐츠	
47	청년농업인육성	
48	공공형버스	국토부
49	공공형택시	
50	벽지노선 지원사업	
51	지역특화재생	
52	투자선도지구	
53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54	고령자복지주택	
55	생활인프라 확대	
56	우리동네 살리기	
57	스마트기술 확산	
58	국토모니터링 추진	
59	노후산단 기반 확충	
60	테마형 관광벨트	
61	돌봄사각지대 보충	복지부
62	분만취약지 지원	
63	교육발전특구	교육부
64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65	고등직업교육 거점지구사업	
66	대학창업	
67	학교복합시설	
68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고용부
69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70	중장년 취업지원	
71	K-하이테크 플랫폼	
72	지역 주도 인재양성지원	
73	고용센터 현장서비스	
74	지역 구인난 해소대응체계	
75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행안부
76	마을기업 육성	
77	기업이전 선도사례창출	
78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79	고향올래	
80	로컬브랜딩	
81	지방소멸대응기금	
82	디지털타운 조성사업	
83	접경지역정주개선	
84	접경지역체류여행	
85	고향사랑기부제	
86	산촌활성화 지원	산림청
87	치유농업센터 구축	농진청
88	치유농장 대표모델	

[참고 8] 시군 농촌특화지구 지정에 관한 의견 요청서(예시)

00시군 00농촌특화지구 의견 요청서

(○ ○ ○ ○시도)

시・도명	담당부서	00국 00과	
	과장	000	전화번호 ( ) -
	팀장	000	전화번호 ( ) -
	담당자	000	전화번호 ( ) -
시・군명	담당부서	00국 00과	
	과장	000	전화번호 ( ) -
	팀장	000	전화번호 ( ) -
	담당자	000	전화번호 ( ) -

Ⅰ. 00농촌특화지구 현황

1. 목적 및 필요성

※ 유사한 기능의 이전・집적화, 농촌다움의 보전 및 농촌경제활성화, 정주개선 등을 위한 해당 농촌특화지구의 목적, 필요성, 타당성 등을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설명하고, 입지적정성 및 기본계획과의 연계성, 중앙정부 및 시・군의 정책방향의 부합성 등도 충분히 포함되도록 작성

(1) 지정 목적

○

○

(2) 필요성

○

○

2. 지정조서 및 도서

(1) 농촌특화지구 지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위 치	지구 유형	면적(㎡)		최초 지정일	비 고
						완충*		
신설				농촌마을 보호지구				

* 마을보호지구인 경우에 표시하며 전체 지구면적 중 완충면적만 표시

(2) 특이사항

① 용도지역별 면적

○ 계획관리지역 00㎡ / 농림지역 00㎡ / 00지역 00㎡ ...

※ 용도지역별로 구분하되 농지의 경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추가 명기하여 표시

② 완충영역

○ 총 00㎡ (계획관리지역 00㎡ / 농림지역 00㎡ / 00지역 00㎡ ...)

※ 완충영역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작성

(3) 지정도서(붙임1)

3. 관리계획

(1) 육성방향

※ 00, 00, 00을 통해 00의 기능을 집중화하고, 00등을 유치하여 00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군이 육성하려는 방향에 대한 핵심적 내용을 작성하고, 향후 달라지는 농촌의 변화상 등도 포함하여 작성

(2) 투자계획: 억원(재원: 국비00, 지방비00, 민간투자 00)

사업명	사업비 (백만원)	재원	사업기간	비고
① OO사업			00~00(0년)	• 00 조성(A=000㎡)
② OO사업				
③ OO사업				
. . .				

① OO사업

※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② OO사업

※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③ OO사업

※ 중점추진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3) 종합구상도

※ 농촌특화지구의 조성완료 시 달성하게 될 미래구상에 대해 작성

4. 기타

(1) 주민의견청취 결과

※ 관련하여 주민의견 청취등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해당시 작성

(2) 관계부처 협의 결과

※ 관련하여 관계부처 협의 사항에 대한 내용이 있거나 해당시 작성

①「000법」에 따른 00에 관한 협의: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 00의 제한을 간소화하여 00의 안전을 확보하여 00추진함에 따라 동의

②「00법」에 따른 00에 관한 협의: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 00의 제한을 간소화하여 00의 안전을 확보하여 00추진함에 따라 동의

(3) 기타

※ 주민협정 체결 결과 기타 특이사항 작성

5 규제개선 및 규제특례 활용방안

○

○

6. 기대 효과

※ 단순히, 부가가치향상, 일자리 창출기여, 균형발전 도모 등 원론적인 효과는 지양하고, 농촌특화지구 조성으로 달라지는 구체적인 성과 위주로 작성(예: 00이 00에서 00% 상승 등)

○

○

II. 주요 의견 요청사항

※ 간략히 작성하되, 의견요청시 중점검토과를 지정하기 위한 참고로 활용

항목	주요 내용	관련과
① 지정기준준수	► ※「농촌공간재구조화법」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사항 작성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② 지정 타당성 등	► ※ 지정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내용 작성	농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각과
③	►	농림축산식품부 00과

<붙임> 1. 농촌특화지구 지정 도면

2. 농촌특화지구 계획(시행계획 전체 또는 해당부분 발췌 제출 가능)

< 작성시 주의 사항 >

○ 요청서는 10쪽(A4기준, 지형도면고시도, 결정도 등 도면의 매수는 제외한 분량을 의미)이내 용량 최소화(시행계획서 그대로 발췌 금지, 최대 요약)

○ 본문 내용은 신명조 또는 휴먼명조 15포인트, * 등은 12 맑은고딕

○ 줄간격 160%, 본문에 스타일 금지

○ 문단위 및 문단아래 간격 사용금지, 문단 간 여백은 필요시 엔터 5포인트

○ 최종 요청서 제출시는 각종 예시나 설명자료(필기체 부분 등)는 삭제

<별첨> 농촌특화지구 지정 도면(5종)

도면1. 지형도면고시도(예시1)	도면1. 지형도면고시도(예시2)
도면2.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예시1)	도면2. 용도지역·용도지구 결정도(예시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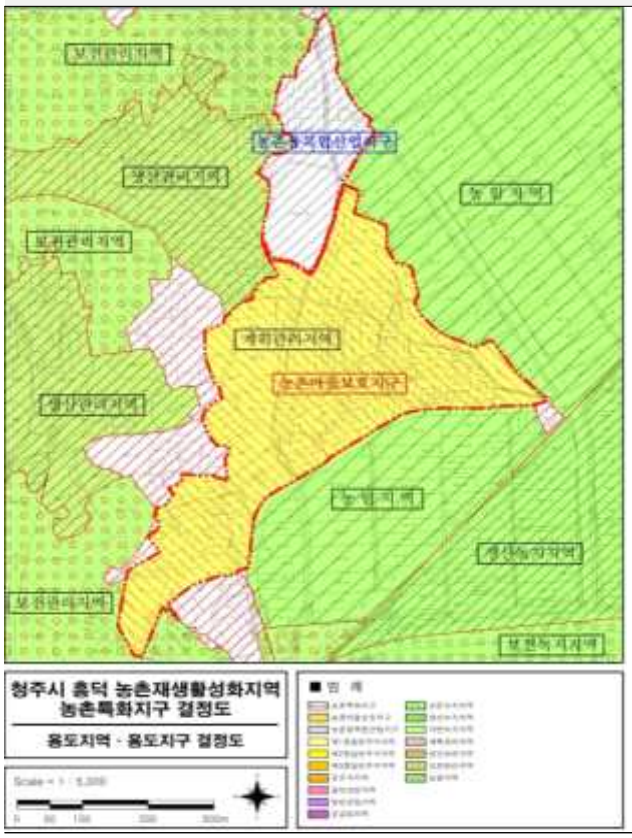	

도면3. 지적도(예시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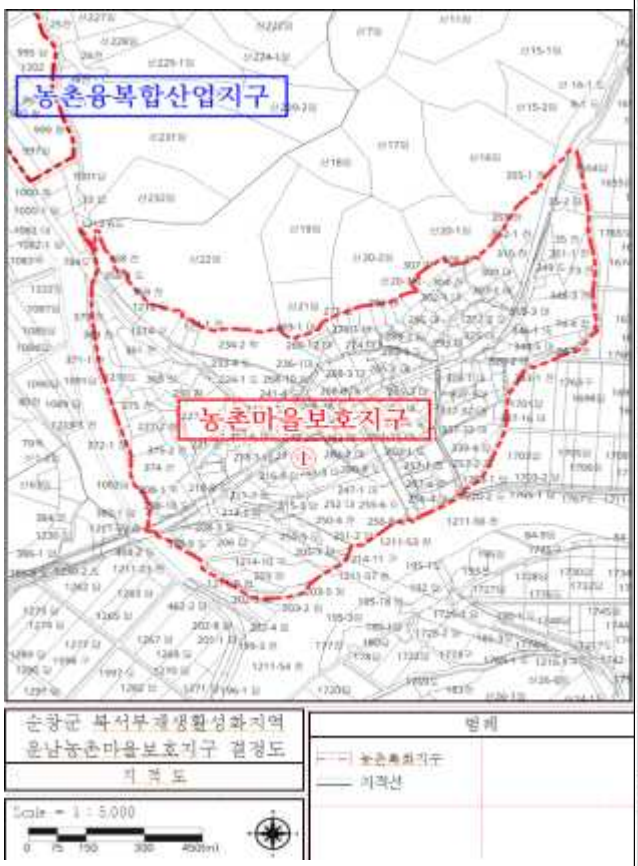

도면3. 지적도(예시2)

도면4. 마을보호지구 완충설정도(예시)

도면5. 지구계결정 사유도(예시)

※ 마을보호지구 완충설정도는 지적도 위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우에 따라 위성사진으로 설명하기가 더 명확한 경우는 추가 가능

[참고 9]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농지법」 시행규칙 제53조의2)

제53조의2(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관한 협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농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으로 지정 또는 결정하거나 변경(영 제60조의2제3항에 따른 경미한 변경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의5서식에 따른 협의요청서 또는 변경협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영 제71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변경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만 첨부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농지인 경우

가. 지정·결정 또는 변경하려는 지역·지구 및 구역 등(이하 이 조에서 "지역등"이라 한다)에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가 포함되는 경우로서 해당 농지가 포함된 농업진흥지역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 1부

가) 지역등의 위치 및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목적

나) 지역등의 토지이용계획

다) 환경오염 예측 및 그 방지대책

라)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지역등의 지정·결정에 관하여 규정한 해당 법률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한 경우로 한정하되, 그 의견이 명시된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과 그 조치계획

2)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을 하려는 토지 및 농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농지의 구분 등이 표시된 내역서 1부

3) 지역등이 표시된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않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1부

4)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제30조제2항제1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규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 각 1부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 결과(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말한다) 1부

7) 그 밖에 지역등의 지정·결정 또는 변경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각 1부